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798
------	------

2024. 5. 3.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4월 5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4. 4. 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4. 5. 3.) 상정,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김태균)

가. 제안이유

-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이관확대 등 기능 조정
 - 기획조정실로 ‘약자와의 동행’에 관한 사무 이관(←약자와의동행추진단)
 - ▶ 공공자산에 관한 사무는 기획조정실→도시공간본부 및 미래공간기획관(규칙기구)으로 이관
 - 경제정책실 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능강화
 - ▶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는 경제정책실→글로벌도시정책관(규칙기구)으로 이관
 - 복지정책실 내 ‘돌봄복지 및 사회적 고립 해소’ 사무 신설 및 ‘1인가구(←여성가족정책실)’ 관련 사무 이관
 - 도시교통실 내 ‘교통단속 업무’를 ‘주차계획’ 업무와 통합 추진
 - 문화본부 내 ‘국가유산 유지보수전수계승’ 업무와 ‘국가유산 복원가치제고’ 업무 역할 재정립 및 조문정비
 - 시민건강국 내 산재되어 있는 난임, 어르신 건강관리, 중독예방, 대사증후군 등 ‘건강관리’ 기능 강화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재편하여 소상공인 지원, 노동정책,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소비자 보호, 농산물 유통 업무 추진
 -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하여 디지털행정, 데이터기반 행정, 정보시스템 및 정보공개, 정보보안, 정보 인프라 구축, 공간정보 업무 추진
 -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재편하여 경제분야 및 안전분야 등 지명직무 단속 추진
 - 재난안전관리실 내 ‘보행환경개선’ 관련 기능 강화
 - ▶ 건설혁신 관련 사무는 재난안전관리실→건설기술정책관(규칙기구)으로 이관

- 주택정책실 내 분산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관련 기능 강화
 - ▶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사무는 주택정책실→건설기술정책관(규칙기구)으로 이관
- 감사위원회 내 ‘청렴 역량 증대 및 반부패 기능’ 강화
 - ▶ 인권 관련 사무는 감사위원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이관
- 주요 실국(1급 기구)의 핵심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통솔범위 조정 및 기존 기구 명시화
 - 도시교통실, 복지정책실, 주택정책실, 재난안전관리실에 각각 ‘교통운영관(3급)’, ‘돌봄·고독정책관(3급)’, ‘주택정책관(3급)’, ‘도로기획관(3급)’ 신설
 - 경제정책실의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 도시교통실의 ‘교통기획관’, 주택정책실의 ‘건축기획관(←주택공급기획관)’ 기구 조례 명시화
- 자율신설기구 일반기구화
 - 자율신설기구 관련 조항인 기구정원규정 제9조의2(기구설치특례)가 폐지됨에 따라 ‘복지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경제일자리기획관’ 정비
 - ※ 기구규칙 사항 : 디자인정책관
- 한시기구 정비 및 존속기한 연장
 - ‘주택공급기획관(3급)’ 을 폐지하고, 건축기획관(3급)으로 재편
 - ‘균형발전기획관(3급)’ 을 일반기구화하고, (3.4급)으로 직급 변경
 - ‘자원회수시설추진단(~’ 24.8.18.)’ 과 ‘한강사업추진단(~’ 24.7.16.)’ 의 존속기한을 각각 3년 연장(’ 24.8.19.~’ 27.8.18. / ’ 24.7.17.~’ 27.7.16.)

- 시민이 알기 쉽고, 간결한 명칭으로 기구 명칭 변경
 - 경제정책실(→경제실), 복지정책실(→복지실), 도시교통실(→교통실), 노동
공정상생정책관(→민생노동국), 재난안전관리실(→재난안전실), 주택정
책실(→주택실), 푸른도시여가국(→정원도시국)
 - ※ 기구 규칙 사항 : 여성가족정책실(→여성가족실)

Ⅲ. 검토의견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문제 해결, 도시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기구 개편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됨.

나.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환경변화 및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을 ▶ 인구변화, 고독·독립 등 사회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매력특별시, 서울’의 본격적인 추진 지원기능 보강, ▶ 기능 재배치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설계 및 실행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안을 마련함.
- 특히 동 조직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이하 “기구정원규정”, '24. 3. 29. 시행) 개정에 따라 실·국·본부 설치기준 삭제, 국장급(3급) 기구 설치 자율화 등 자치조직 권한이 확대된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 < 기구정원규정 주요 개정사항('24. 3. 29. 시행) > —

□ 국장급(3급) 기구 설치 자율화

- 인구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 폐지(별표 1 삭제) (서울 16~18개 限)
- 기구 수 상한을 전제로 한 자율신설기구 설치기준 폐지(§9의2 삭제)
-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행정안전부 협의절차 폐지하되, 2급 이상의 경우 협의 존치(§21 개정)

□ 시·도 2·3급 정원관리 기준 명확화

- 국장급 기구설치는 자율화하되, 서울시의 2·3급 정원(14명)을 법령에 명시하여 기구 수 지속 관리(별표2 제1호)

- 이에 따라 서울시는 3급 기구의 추가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9개의 국 단위 기구를 신설하고, 3급 한시기구의 협의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등 탄력적인 기구 운영이 가능하게 됨.

< 국장급 기구(3급) 조직개편 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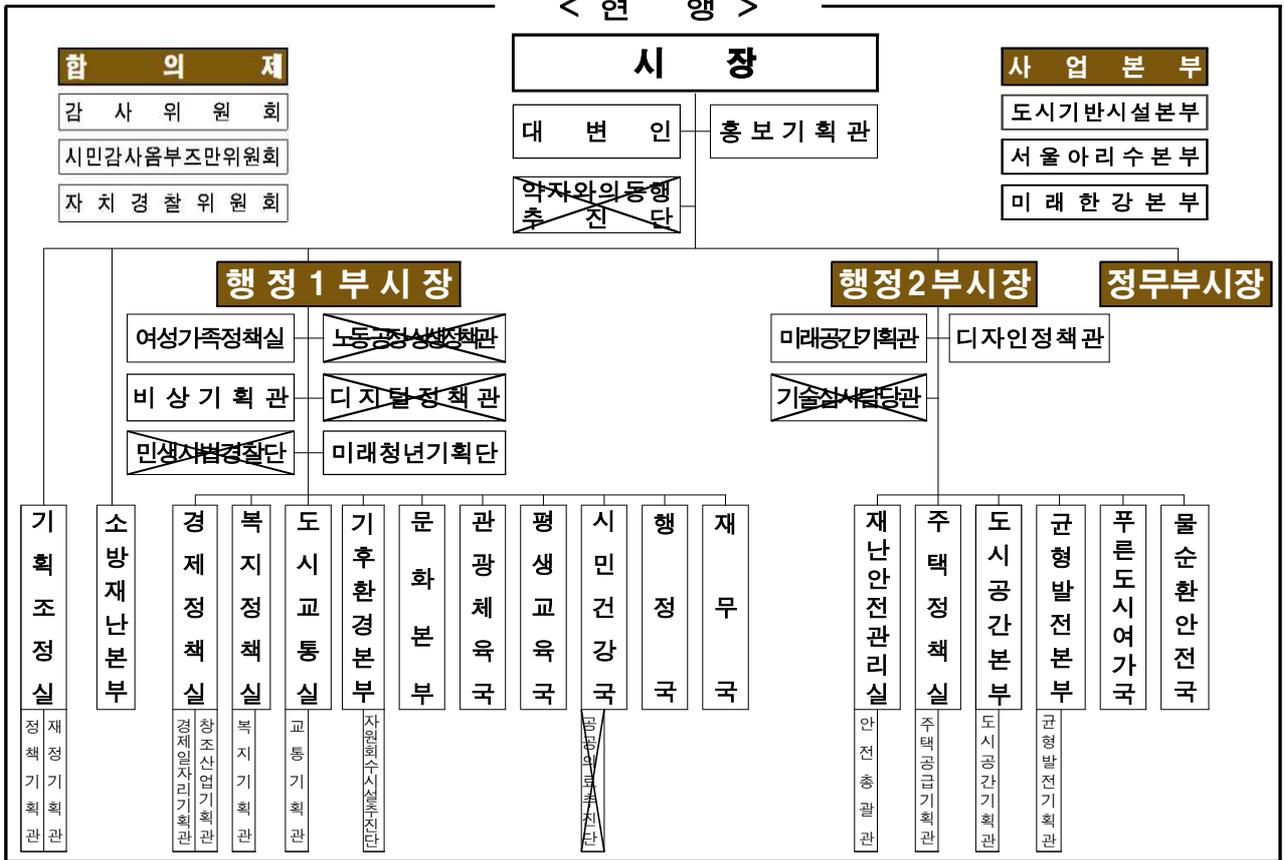
연 번	기구 직급	기구 명	총 전 기 구
1	3급	민생사법경찰국	← 민생사법경찰단(3·4급, 과장·담당관)
2	3급	(보조) 교통운영관	신 설
3	3급	(보조) 교통기획관	← 교통기획관(3급 보좌기구, 관·단)
4	3급	(보조) 경제일자리기획관	← 일반기구화[(자율신설기구) 경제일자리기획관(2·3급)]
5	3급	(보조) 창조산업기획관	← 창조산업기획관(3·4급, 과장·담당관)
6	3급	(보조) 건축기획관	← 일반기구화[(한시기구) 주택공급기획관(3급)]
7	3급	(보조) 주택정책관	신 설
8	3급	(보조) 돌봄·고독정책관	신 설
9	3급	(보조) 도로기획관	신 설

< 한시기구(3급) 조직개편 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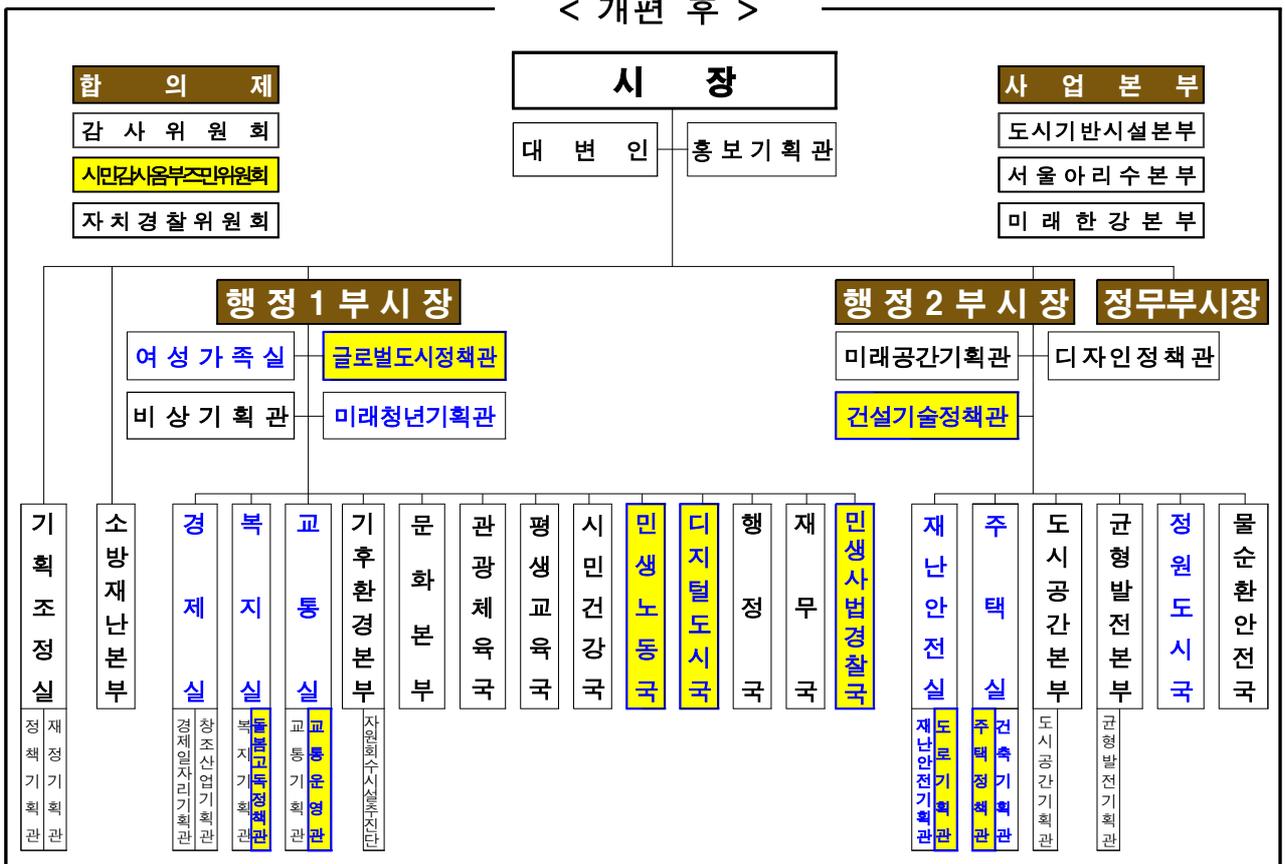
소 속	한 시 기 구 명	존 속 기 한	조 직 개 편 사 항
본 청	(3급) 주택공급기획관	'23. 8. 19. ~ '24. 8. 18.	건축기획관(3급)으로 일반기구화
	(3급)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3·4급)으로 일반기구화
	(3급)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존속기한 3년 연장
사업소	(3급) 한강사업추진단	'23. 7. 17. ~ '24. 7. 16.	존속기한 3년 연장

- 결론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서울시의 조직체계는 ‘6실 5본부 10국 15관·단 5과장·담당관 3합의제’에서 ‘6실 5본부 19국(10국 9보조) 13관·단 2과장·담당관 3합의제로 개편됨(+9국 △2관·단 △3과장·담당관).

< 현 행 >



< 개편 후 >



-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도시정책관(2·3급), 돌봄·고독정책관(3급), 저출생담당관(4급)을 신설하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3급)을 기획조정실 산하의 약자동행담당관으로 재편함.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 대개조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미래공간기획관(3급)에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도시활력담당관’을 신설하고, 재난안전실(1·2급)에 ‘보행환경개선과’를 신설함.
 -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본격적인 개발과 편 시티(Fun City) 조성을 전담하기 위해 ‘용산입체도시담당관’ 및 ‘도시활력담당관’을 신설하고,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도로관리과의 보도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보행환경개선과’를 신설함.
- 시민안전·건강·교통·주거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을 신설함.
 - 본격적인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추진하고자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건설기술정책관(3급)’을 신설함.
 - 시민건강국 내 산재한 시민건강 관리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건강관리과’를 신설하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위한 마약관리센터의 정원을 보강함.
 -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기

능을 통합하고자 주택실에 ‘임대주택과’ 를 신설함.

- 주요 실국(1급)의 추진력 강화를 위해 통솔범위를 조정하고, 기존의 규칙상 기구와 한시·자율기구를 보조기관 및 일반기구화하여 조례상의 기구로 명시함.
- 교통운영관, 돌봄·고독정책관·주택정책관·도로기획관 등 3급 기구를 신설하여 과도한 통솔범위를 적정화하고, 경제일자리기획관[3급 보조기관(중전 2·3급 자율신설기구)], 창조산업기획관[3급 보조기관(중전 3·4급 보좌기관)], 교통기획관[3급 보조기관(중전 3급 보좌기관)], 건축기획관[3급 보조기관(중전 주택공급기획관 - 3급 한시기구)]을 조례상 기구로 편입함.
- 자율신설기구[복지기획관, 디자인정책관(규칙사항), 경제일자리기획관]와 한시기구인 주택공급기획관 및 균형발전기획관을 일반기구화하고, 자원회수시설추진단과 한강사업추진단은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함.
- 그 밖에 기구 명칭을 시민이 알기 쉽도록 간결하게 변경함.

< 조직개편안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 >

현 행	조직개편안
경제정책실	경제실
복지정책실	복지실
도시교통실	교통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민생노동국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실
주택정책실	주택실
푸른도시여가국	정원도시국
여성가족정책실 (규칙사항)	여성가족실

< 3급 이상 조직개편 내역 >

구 분		현 행		변 경	
실 (-)	1급	6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u>도시교통실, 재난안전관리실, 주택정책실</u>	6	기획조정실, 경제실, 복지실 교통실, 재난안전실, 주택실
	소방 정감	1	소방재난본부	1	(변동 없음)
본부 (-)	2·3급	4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4	(변동 없음)
	2·3급 (Δ1)	10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u>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u> <u>복지기획관(자율),</u> <u>디자인정책관(자율), 경제일자리기획관(자율)</u>	9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정원도시국, 물순환안전국, 민생노동국, 디지털도시국
국 (+9)	2·3급 보조 (+1)	-	-	1	복지기획관
	3급 (+1)	-	-	1	민생사법경찰국
	3급 보조 (+8)	-	-	8	교통운영관, 교통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 건축기획관, 주택정책관 돌봄·고독정책관, 도로기획관
관 · 단 (Δ2)	1급	1	<u>여성가족정책실</u>	1	여성가족실
	2·3급	6	대변인, 홍보기획관 비상기획관, 정책기획관 <u>노동·공정·상생정책관, 디지털정책관</u>	6	대변인, 홍보기획관 비상기획관, 정책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글로벌도시정책관
	3급	5	<u>약자와의동행추진단</u> 재정기획관, <u>교통기획관</u> 미래공간기획관, 안전총괄관	5	건설기술정책관 미래청년기획관, 재정기획관 미래공간기획관, 재난안전기획관
	3급 (한시) (Δ2)	3	자원회수시설추진단(한시) <u>균형발전기획관(한시),</u> <u>주택공급기획관(한시)</u>	1	자원회수시설추진단(한시)
과장· 담당관 (Δ3)	3·4급 (Δ3)	5	도시공간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 <u>미래청년기획단, 창조산업기획관,</u> <u>공공의료추진단</u>	2	도시공간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협의체 (-)	2·3급 (-) 3·4급 (+1)	3	자치경찰위원회(정무직), 감사위원회(2·3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급)	3	자치경찰위원회(정무직), 감사위원회(2·3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4급)

※ 본청 외 한시기구(1개) : 미래한강본부 내 ‘한강사업추진단’(3급)

다. 개정안의 세부 검토

(1) 자율신설기구의 정비(안 제1조·안 제3조의2 등)

- 기구정원규정의 개정('24. 3. 29. 시행)에 따라 국장급(시·도 3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되면서, 기존 기구 수 상한을 전제로 한 자율신설기구 설치기준이 폐지됨(기구정원규정 제9조의2¹⁾ 삭제).
- 서울시는 현재 디자인정책관, 복지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 등 총 3개의 자율신설기구²⁾를 두고 있으며 그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18일 까지로³⁾,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 규정의 정비(성과평가, 존속기한 규정 등 삭제)를 통해 자율신설기구를 일반기구화하는 것임.

< 서울시 자율신설기구 현황 >

기구명	소속	기구 성격	직급	비고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 산하	보조기관	2·3급	개편 후 3급 기구로 변경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 산하	보조기관	2·3급	
디자인정책관	행정(2)부시장 직속	보좌기관	2·3급	규칙 기구

- 이는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고자 한 기구정원규정의 개정 취지를 적시에 반영하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자율신설기구의 운영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행정사무의 추진이 가능할

1)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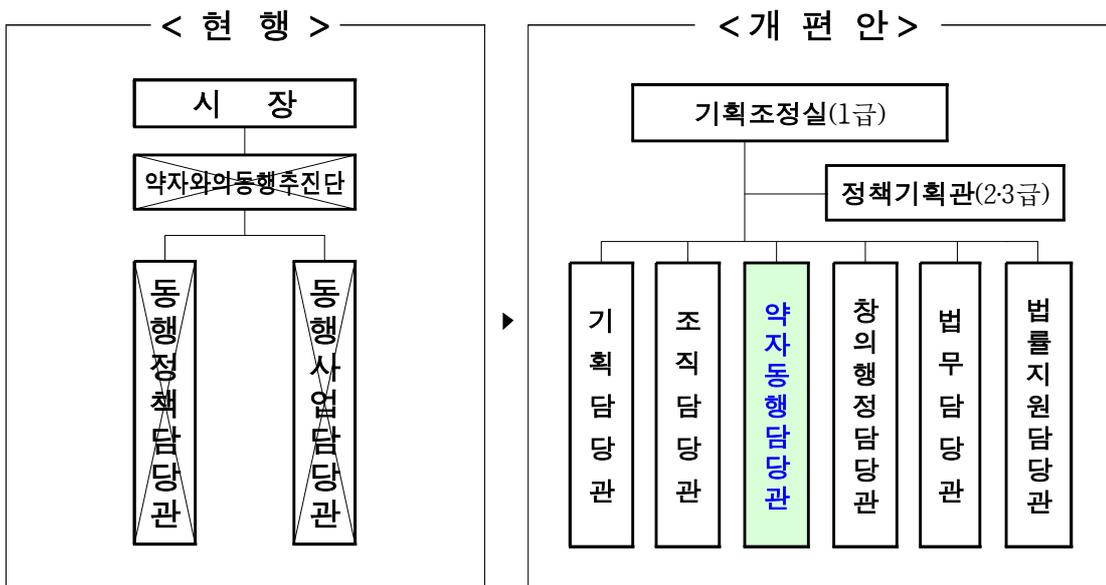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3항

3) 조례 제844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것으로 보임.

(2) 기획조정실의 개편(안 제5조)

- 안 제5조는 민선 8기 서울시정의 비전인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무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의 분장사무로 추가하는 것임(안 제5조제3호).
-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시장의 직속기구인 ‘약자와의 동행추진단(3급)’을 기획조정실(1급) 산하의 ‘약자동행담당관(4급)’으로 재편하여 기획조정실의 기획·예산·평가기능과 연계하고, 약자 동행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와 그 성과관리 제고에 초점을 두겠다는 취지임.



- 당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과 대표 신규 사업의 발굴·기획을 위해 2022년 8월 19일, 시장 직속기구로 신설되어 2개의 담당관(6팀), 정원 28명(현원 32명)으로 구성됨.

<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업무분장 >

동행정책담당관	동행사업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계획 수립·총괄 조정 - 사회적 약자 실태조사, 시각지대 발굴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약자 동행 지수 개발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약자 동행 지수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 사회적 약자와의 현장 소통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약자 지원 신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 재구조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각 실·본부·국별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 동 추진단은 각 실·국에 있는 약자 동행 관련 사업에 대한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총괄·조정 기능이 중요한바, 총 406개의 약자동행지표 연계 사업 중 1급 기구 소관 사업의 비율이 244개로 약 60%에 이르고 있어, 그동안 효과적인 총괄·조정 기능의 수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

< 약자동행지표 연계 사업 중 1급 기구 소관 비율 >

(단위: 개)

구 분	연계 사업 수(비율)
경제정책실 (1.2급)	9 (2.2%)
복지정책실 (1.2급)	69 (17%)
도시교통실 (1.2급)	16 (3.9%)
재난안전관리실 (1.2급)	11 (2.7%)
주택정책실 (1.2급)	42 (10.3%)
여성가족정책실 (1급)	97 (23.9%)
합 계	244 (60%)

- 따라서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성격, 기구 직급, 기존 업무량을 고려하면, 1급 기구인 기획조정실 산하의 ‘약자동행담당관⁴⁾(4급)’으로 재편하는 방안은 관련 사업의 실행력 제고 및 총괄 기능 강화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약자동행담당관을 실·국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경우, 보좌기관이 사실상 계선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재단계가 복잡해지고, 계층 수의 증가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조정기능 강화 및 성과관리 제고를 위하여 약자와의동행단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었는지, 총괄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다른 방안은 없었는지에 대해 집행기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그 밖에 안 제5조제3호는 약자 동행 관련 사무를 추가하여 건제 순서를 정책기획관의 보좌 분야(시정계획, 조직관리, 법무행정 등)에 배치하는 것으로 의도하고 있으나 약자동행 정책의 실효성 확보 수단(투자심사 기준 및 재정운용 반영)⁵⁾ 및 업무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고려하면, 재정기획관의 보좌 분야(투자재원 배분·조정,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조정, 성과평가 등)로 건제 순서를 달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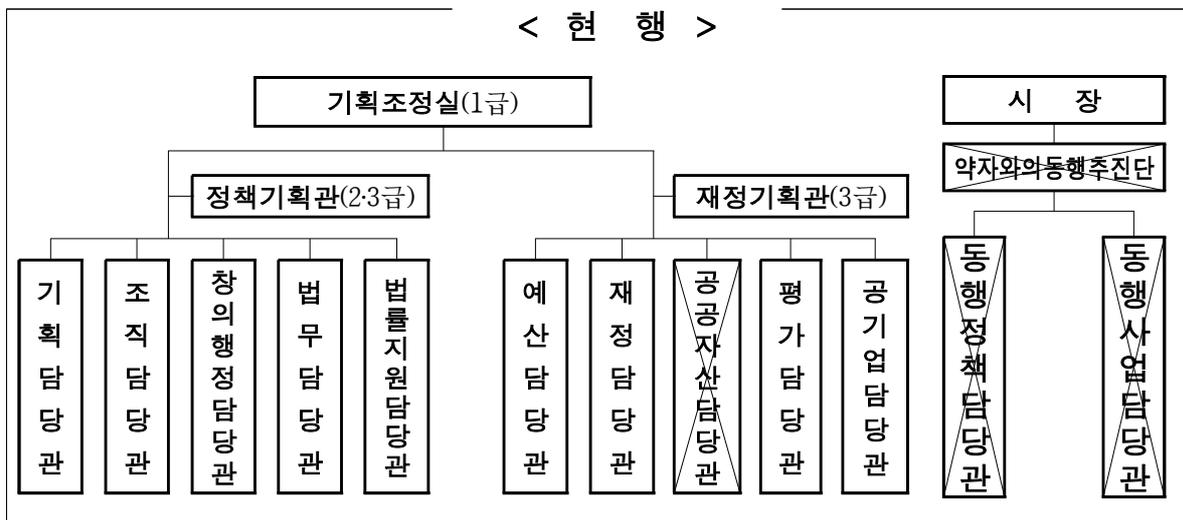
4) 주요 업무: 약자동행 기본계획 수립, 약자동행사업 성과평가·재구조화, 약자동행 시민참여예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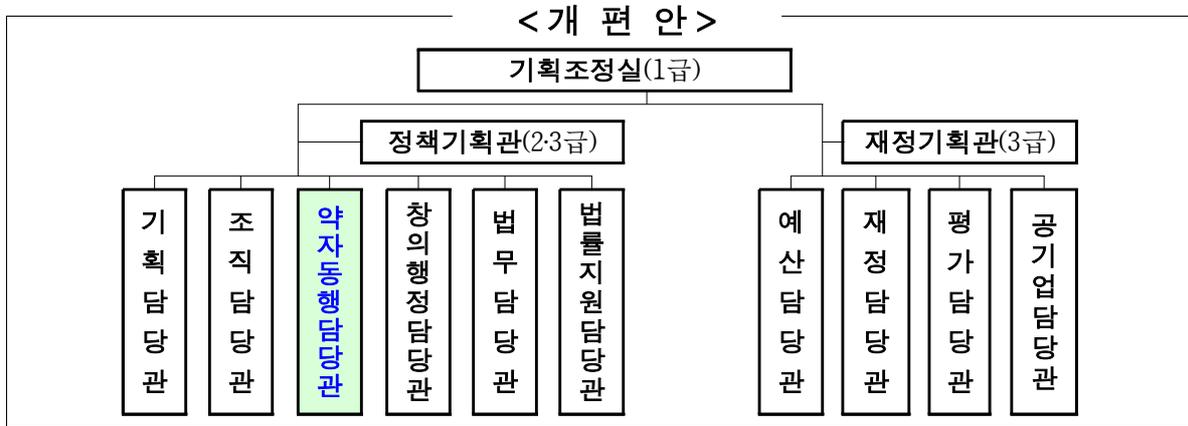
5)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0조(정책의 실효성 확보)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시 약자동행의 관점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약자동행 지수에 따라 약자동행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공간정책 실행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기획조정실의 분장사무 중 ‘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 을 삭제하여(안 제5조제8호 삭제) ‘공공자산담당관’ 을 폐지하면서 ‘미래공간기획관’ 과 ‘도시공간본부’ 에 그 기능을 각각 이관할 계획임.

공공부지 활용 구상 기능	⇒ 이관 ⇒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대규모 부지 개발기획기능과 통합
공공자산담당관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기부채납 관련 계획 및 제도 개선 기능과 통합
기부채납시설·기금 관리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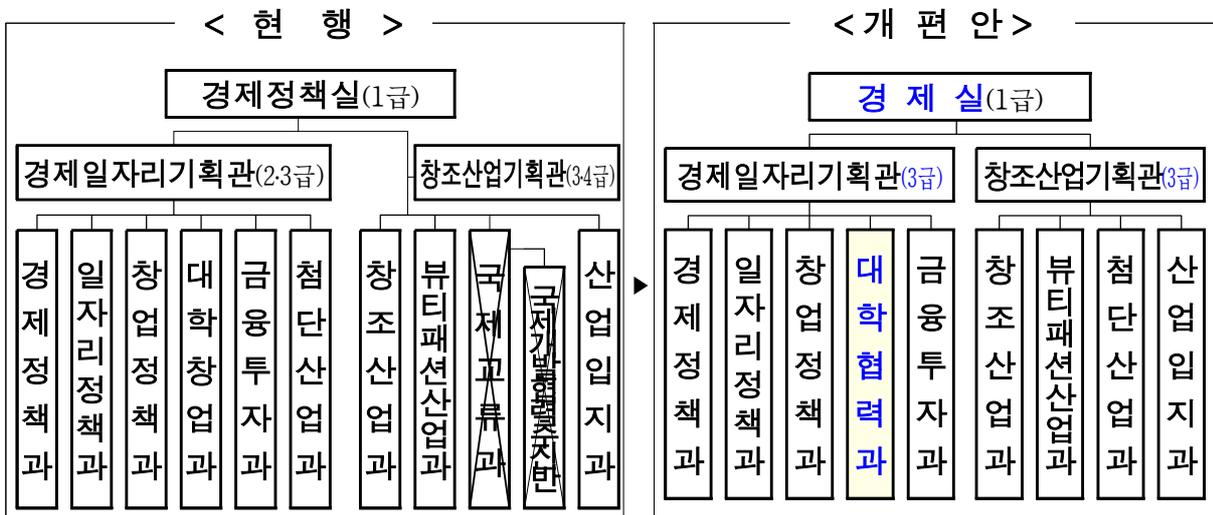
- 이는 지난 '22년 7월 조직개편 당시 공공자산담당관이 도시계획국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통합관리 업무와 공공개발기획단(미래공간기획관으로 통합)의 공공토지활용 등 공공자산 관련 기능을 이관받아 신설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기능 이관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3) 경제정책실의 재편(안 제6조)

- 경제정책실은 ‘경제실’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정원규정의 개정으로 3급 직급의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 경제실장을 보좌하는 경제일자리기획관(2·3급)과 창조산업기획관(3·4급)의 직급을 각각 3급으로 조정함.
- 또한 서울시는 경제일자리기획관 소속의 대학창업과를 ‘대학협력과’로 재편하고, 창조산업기획관 소속의 국제교류과와 국제개발협력추진반을 신설되는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하되, 균형 있는 업무량 배분을 위해 경제일자리기획관 소속의 첨단산업과를 창조산업기획관 소속으로 옮겨 1실 2관 9과로 개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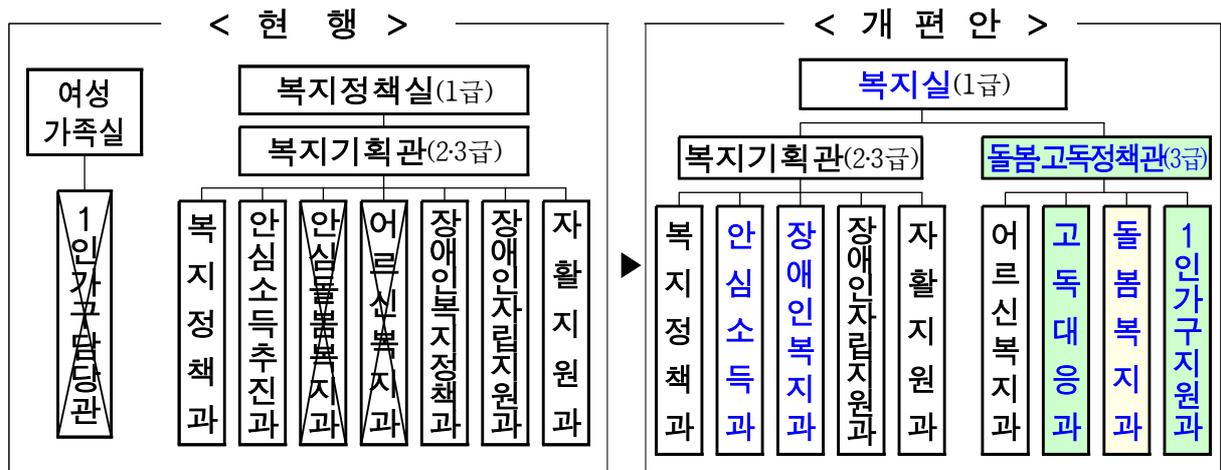
- ‘대학협력과’ 는 기존에 캠퍼스타운 사업을 담당하던 대학창업과에 현재 경제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⁶⁾ (이하 “RISE사업”) 관련 기능을 추가하여 재편·신설됨.
- 현재 7개 시·도⁷⁾에서 시범사업 중인 RISE사업은 2025년부터 전체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RISE사업 수행 역량강화를 위해 시도별 RISE사업 전담조직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바, 종전에 지역활성화와 대학교 창업지원사업이 접목된 캠퍼스타운 사업을 시행하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RISE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부서 편제라고 사료됨.
- 또한 그동안 경제정책실의 사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국제교류 협력, 국제기구·회의업무, 국제개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던 ‘국제교류과’ 와 ‘국제개발협력추진반’ 을 이민정책과 국제교류 업무의 총괄을 위해 신설되는 ‘글로벌도시정책관’ 으로 이관함으로써 조직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대학협력과’ 라는 부서 명칭은 조직개편 이후에도 주요 업무로 남아있는 대학창업 지원 업무까지 아우르는 명칭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직관적인 명칭으로의 재정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두문자를 활용한 줄임말로, 종전까지 교육부에서 실시하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시·도로 이양하되, 시·도의 주도로 지역대학을 허브화하고 교육청, 산업계 등의 참여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 지역혁신 등을 도모하는 협력체계를 의미함.

7)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4) 복지정책실의 기능 확대 · 개편(안 제7조)

- 복지정책실은 ‘복지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정원규정의 개정으로 3급 기구의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 복지실장 밑에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하며, ‘돌봄·고독정책관’에는 복지기획관으로부터 안심돌봄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를, 여성가족실로부터 1인가구담당관을 각각 이관받고, 고독대응과를 신설·배치하여 1실 2관 9과로 확대·개편됨.
- 또한 복지기획관 소속의 안심소득추진과와 장애인복지정책과는 각각 ‘안심소득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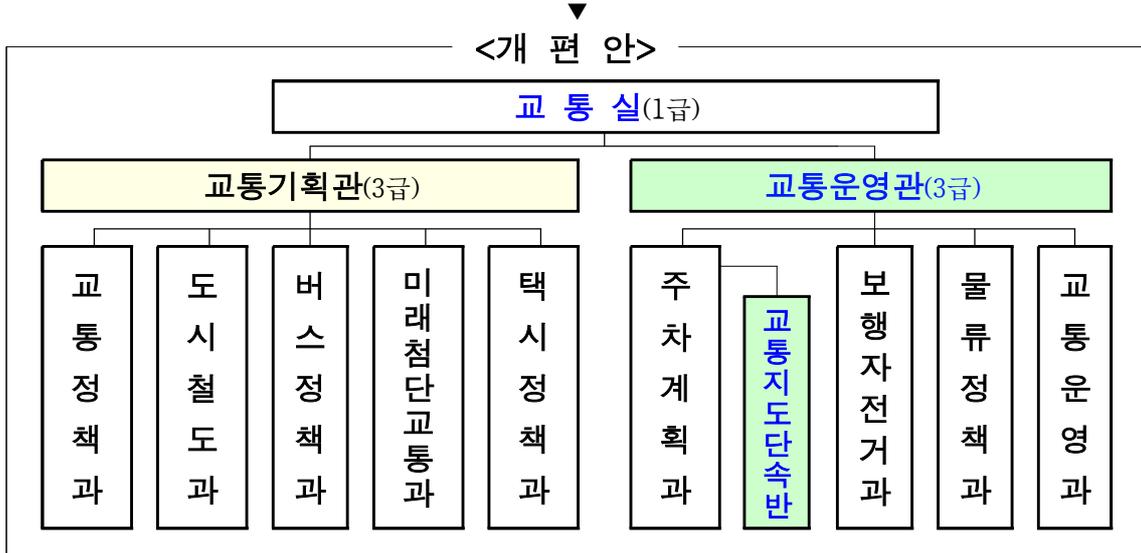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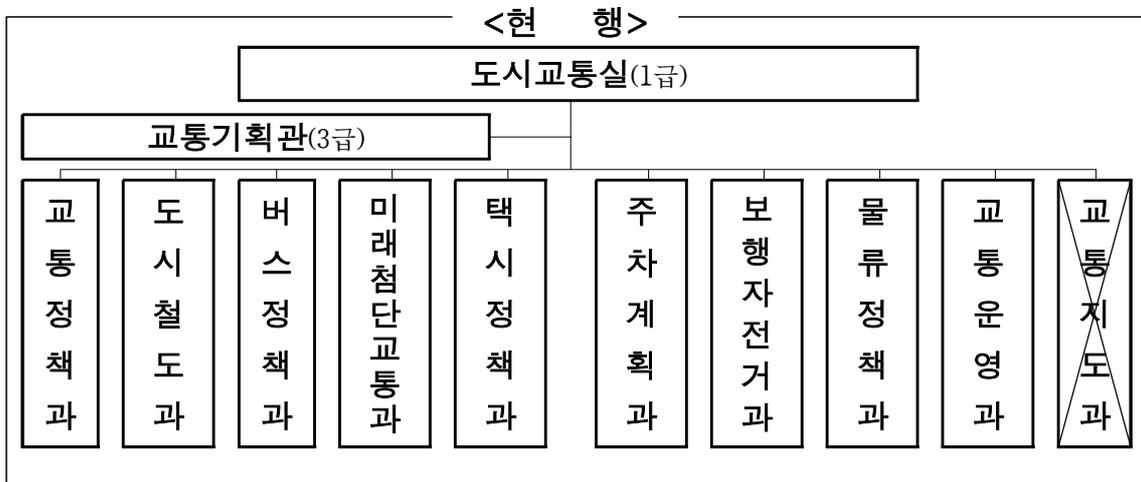
- ‘돌봄·고독정책관’은 돌봄복지 및 사회적 고립 해소 전담조직으로 신설되어 생애주기별 고독문제,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돌봄·고독정책관’ 소속으로 신설되는 ‘고독대응과’는 고립위험군별 맞춤형 안전관리, 고독고립 해소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고독

고립 실태조사 및 분석, 사회적 연결 지원정책 총괄 등의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 또한 ‘돌봄·고독정책관’은 종전에 어르신복지과에서 수행하던 사무(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 독거어르신 주거, 고령자 취약계층 집중돌봄, 노인주택 운영 등)와 안심돌봄복지과에서 수행하던 사무(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스마트활용 고독사 예방, 우리동네 돌봄단, 고립위험가구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고독고립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를 이관받게 됨.
- 그리고 ‘돌봄·고독정책관’ 소속 ‘1인가구지원과’는 고독 위기 1인가구 보호 및 안심업무를 통합 추진하기 위해 1인가구 정책 총괄,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병원안심동행, 행복한 밥상 등의 사무를 여성가족실로부터 이관받았으나, 돌봄·고독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안심마을보안관,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물품 지원 사업 등의 사무는 여성가족실(양성평등담당관)에 존치됨.
- 이와 같은 복지정책실의 조직개편안은 경제성장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초개인화시대에 돌입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노인돌봄 등의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전담조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어르신복지과, 안심돌봄복지과 등 여러 부서의 사무를 이관하여 고독대응과로 집중하는 만큼 부서 신설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확대하여야 할 것임.

(5) 도시교통실의 기능 재편(안 제8조)

- 도시교통실은 ‘교통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전에 교통기획관 소속이던 주차계획과, 보행자전거과, 물류정책과, 교통운영과를 신설되는 ‘교통운영관’ (3급)으로 이관하며, 교통지도과는 주차계획과와 통합하되 단속기능은 ‘교통지도단속반(신설)’으로 분리하여 1실 2관 9과 1반으로 재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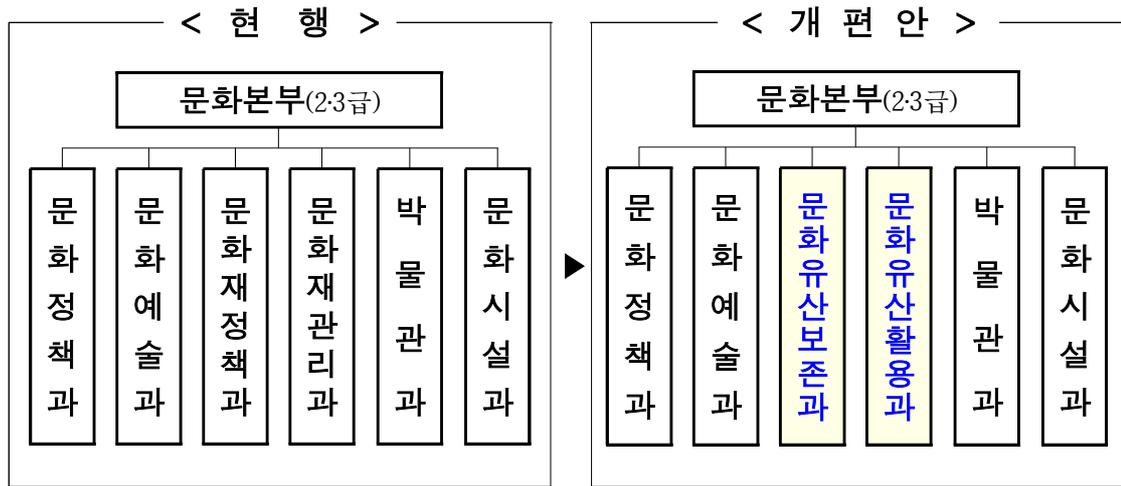


- 이는 교통기획관에 주로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부서를 배치하고, 교통운영관은 교통수단과 이용자(보행자 포함) 등에 대한 환경조성과 운영 관련 부서를 배치한 것으로, 대중교통에 관한 정책과 주요 민원은 일반적인 교통환경 조성이나 보행·자전거, 물류 등과 구분되고, 수도권 광역 교통망과 연계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능적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음.
- 다만 ‘버스전용차로’, ‘교통소통 개선’, ‘환승시설 조성’ 등 교통기획관 소관에 속하는 대중교통 정책 관련 일부 사무가 교통운영관에 편성되었는바, 소관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와 부서 간 긴밀한 업무 연계 방안이 요구됨.
- 한편 교통지도단속반은 현장에서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시간선택제공무원(135명)의 관리가 주된 업무로 교통지도과에서 분리·신설된 것이나 4급 조직인 주차계획과에 4·5급 복수직급 조직으로 배치됨에 따라 명령·보고체계에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교통정책과 소속으로 기후동행카드팀이 신설될 예정이나 동 사업의 본격화 및 확대를 위해 전담조직의 신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효과성 검증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및 조직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6) 문화본부의 기능 재편(안 제10조)

- 문화본부는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개

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재의 부서 명칭에 소관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고자 ‘문화재정책과’ 8)와 ‘문화재관리과’ 9)의 명칭을 각각 ‘문화유산보존과’와 ‘문화유산활용과’로 변경함.



- 이 중 ‘문화유산보존과’는 문화유산의 유지보수·전수·계승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문화유산활용과’는 문화재 복원 및 보수, 가치 제고의 기능을 전담할 예정임.
- 박물관과는 현재 조성 중인 조각도시 서울 및 4개 시설¹⁰⁾을 포함하여 추후 조성되는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성이 완료·운영단계에 있는 문화시설 중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서울사진미술관(24.11.)’은 ‘서울시립미술관’으로 각각 이관됨.

8) 문화재정책과: 문화유산 보존,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문화재 지정관리 및 전승활동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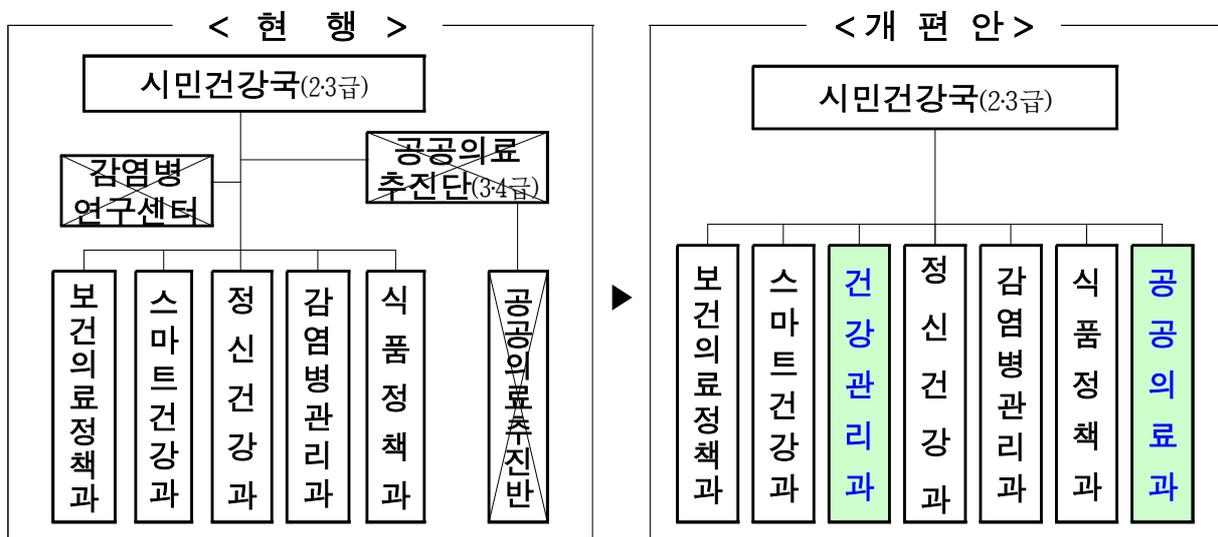
9) 문화재관리과: 문화재 복원, 관리, 안전총괄

10) 조각도시 서울(2024년 연중), 서서울미술관(2025.7.),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2025.7.), 보이는 수장고(2028.6.), 이순신 기념관(미정)

- 이와 같이 문화본부의 조직개편은 일부 소속 부서의 명칭 변경과 사업 소로의 업무이관에 불과하나 행정기구 명칭에 부서 기능을 반영하여 관련 업무를 조정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일반적으로 문화유산보존의 개념에는 ‘복원, 유지보수, 전수, 계승’ 이 포함되어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문화재의 가치 제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 문화유산의 활용은 관련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사업적 활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이 문화유산보존과 사무가 아닌 문화유산활용과에 문화유산 복원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 것은 업무의 연계성 측면에서 다소 의문이라 하겠음.

(7) 시민건강국의 재편(안 제12조의2)

- 시민건강국은 공공의료추진단(3·4급)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폐지되고, ‘건강관리과’ 신설과 함께 공공의료추진반(4·5급)이 ‘공공의료과(4급)’로 직급이 조정되면서 기존의 1국 6과 1단 1반에서 1국 7과로 개편됨.



- 안 제12조의2는 시민건강국의 조직 및 업무 재편 사항을 반영하여 ‘스마트건강과’의 주된 사무인 서울형 헬스케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제2호 관련), 현재 감염병관리과의 분장사무이나 별도의 호로 규정되어 있던 조문을 감염병관리과의 사무로 정리함(제4호·제6호 관련).
- 이를¹¹⁾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건강관리과’는 국 내에 산재한 난임, 어르신 건강관리, 중독예방, 대사증후군 등 시민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고자 신설됨.

< ‘건강관리과(신설)’ 주요 업무 현황 >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	기존 업무 소관 부서
·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 예방, 만성질환 안심돌봄 건강관리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 건강정책 수립, 금연도시 서울 등	스마트건강과 스마트건강정책팀
· 통합건강증진, 지역사회건강조사, 비만 및 음주 예방, 장애인 의료접근성 및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스마트건강과 건강생활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점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임신·출산 정보센터 운영, 모자건강센터 설치 지원 등	스마트건강과 가족건강팀
· 난임시술비 지원, 난자 동결, 난임부부 지원 등	스마트건강과 건강임신지원팀
·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총괄, 어르신 건강체계 구축, 방문 간호사 인력 관리	보건의료정책과 어르신건강관리팀

- 그리고 ‘공공의료추진단’은 2022년 조직개편 당시 고품질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신설되었는데, 현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업무가 안정화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고, 계선조직으로 있는 ‘공공의료추진반(4·5급)’을 ‘공공의료과(4급)¹²⁾’로 재편함.

11) 이하 시민건강국의 재편 내용은 규칙 개정을 전제로 함.

- 이와 관련하여 기구정원규정¹³⁾에 따르면, 과는 일정 요건 외에 12명(5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현재 공공의료추진반(4·5급)의 정·현원은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공공의료과(4급)’ 로의 재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¹⁴⁾.

< 공공의료추진단 정·현원 현황 >

구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정원	19	1	1	6	5	6	—
현원	18	1	1	7	6	2	1
과부족	-1	—	—	1	1	-4	1

- 한편 감염병연구센터(4급, 개방형직위)는 2020년 7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시기에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와 감염병 정책 연구, 환자치료 지원 등의 전담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이후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해소¹⁵⁾되면서 코로나19 관련 기능이 감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감염병관리과’ 로 이관함¹⁶⁾.

12) 공공의료과 주요 업무: 공공의료 강화계획 및 시립병원 종합 개선 계획 수립, 시립병원 시설 확충, 공공병원 건립, 시립병원 운영 강화 및 안전관리 총괄 등

13)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⑤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급 4명 이상, 시·군·구는 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1.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14) 공공의료추진단의 3·4급 및 기술4·5급이 각 1명씩 감원되고, 재편되는 공공의료과에 행정4급 1명이 증원되는 것 외에는 나머지 정원의 변동사항은 없음.

15)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 5. 5.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질병관리청은 2023. 8. 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였음.

16) 감염병관리센터 폐지에 관한 사항은 규칙상의 사항이며, 현재 감염병관리센터장은 개방형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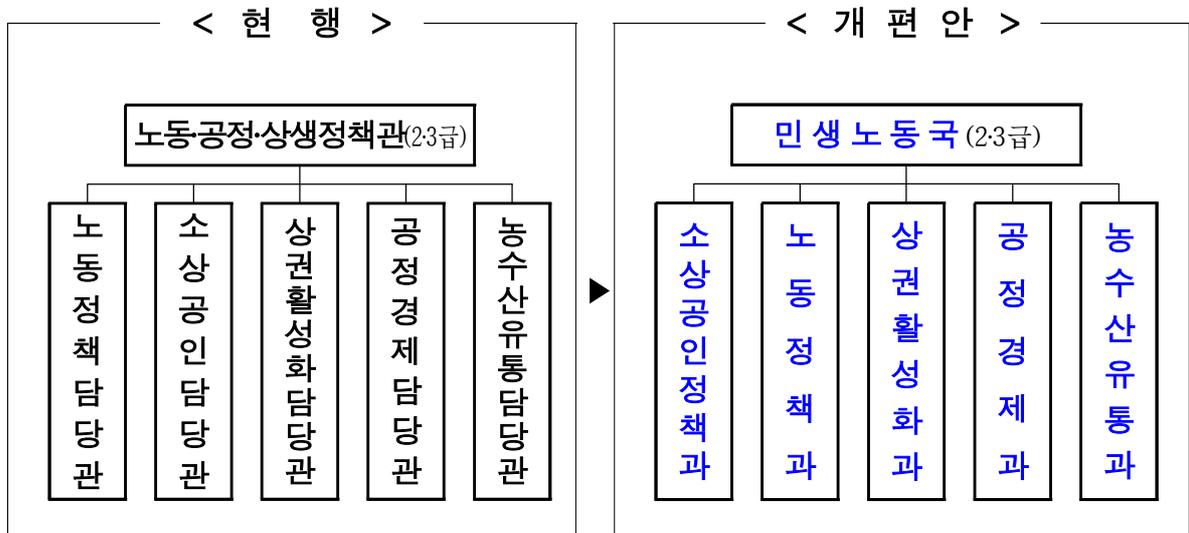
< 감염병연구센터 폐지에 따른 기능 이관 >

감염병관리과 주요 업무	기존 업무 소관 부서
·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방역	감염병관리과 기존 업무
· 필수 예방접종,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 계획 수립 및 관리	
· 먹는물 관리 상시 방역자원 관리체계 구축 등	
· 감염병 관련 국제교류,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감염병연구센터 연구기획팀
· 감염병 정책 연구 및 평가, 감염병 정보 분석 및 동향 파악, 데이터 관리	감염병연구센터 연구기획팀
· 의료자원 분석 및 의료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감염병연구센터 교육지원팀

- 다만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위협 상황이 해소되었다고 하나 신종 감염병의 출현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기능 이관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8)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재편(안 제12조의3)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민생노동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1부시장의 보좌기구에서 보조기구로 전환되면서 1관 5담당관에서 1국 5과로 재편됨.
- 또한 국 총괄부서를 ‘노동정책담당관’에서 ‘소상공인정책과’로 재배치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분야의 안정·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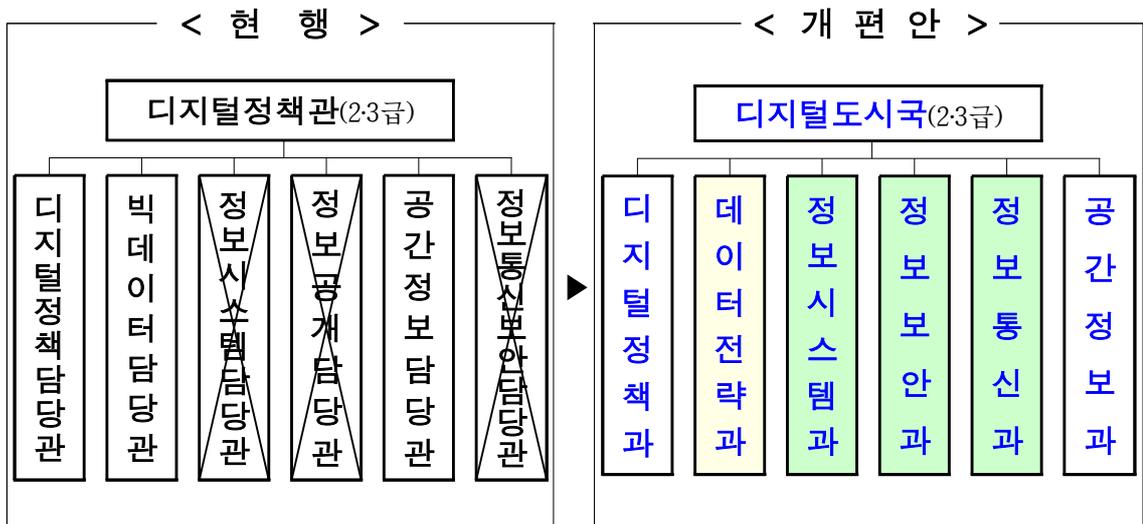
- 이번 민생노동국의 재편은 기구정원규정이 개정되어 국 단위 부서의 설치에 대한 제한이 해소됨에 따라 종전에 사업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직제상 참모조직으로 운영되었던 점을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이와 같은 총괄부서의 변경은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나,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에 대한 권익 보호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한편 서울시는 2019년에 설치된 ‘노동민생정책관’의 명칭을 2021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노동국’으로 회귀하고 있는바, 빈번한 명칭 변경은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발생시키고 시민의 조직 이해도를 낮출 수 있으므로 부서 명칭의 변경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이와 더불어 농수산유통과는 팀 수가 3개에 불과하여 기구정원규정에서 정한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사무관 4명 이상)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음.

(9) 디지털정책관의 명칭 변경 및 개편(안 제12조의4)

- 디지털정책관은 명칭을 디지털도시국으로 변경하고 소속 부서 간 업무조정과 함께 조직 성격을 보좌기구에서 계선조직으로 개편함에 따라 종전의 1정책관 6담당관에서 1국 6과로 변경됨.



- 한편 디지털정책관 소속 빅데이터담당관은 실·국·본부의 주요정책 수립과 성과평가 등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부서의 주된 기능을 반영하여 그 명칭을 '데이터전략과'로 변경함.
- 또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의 업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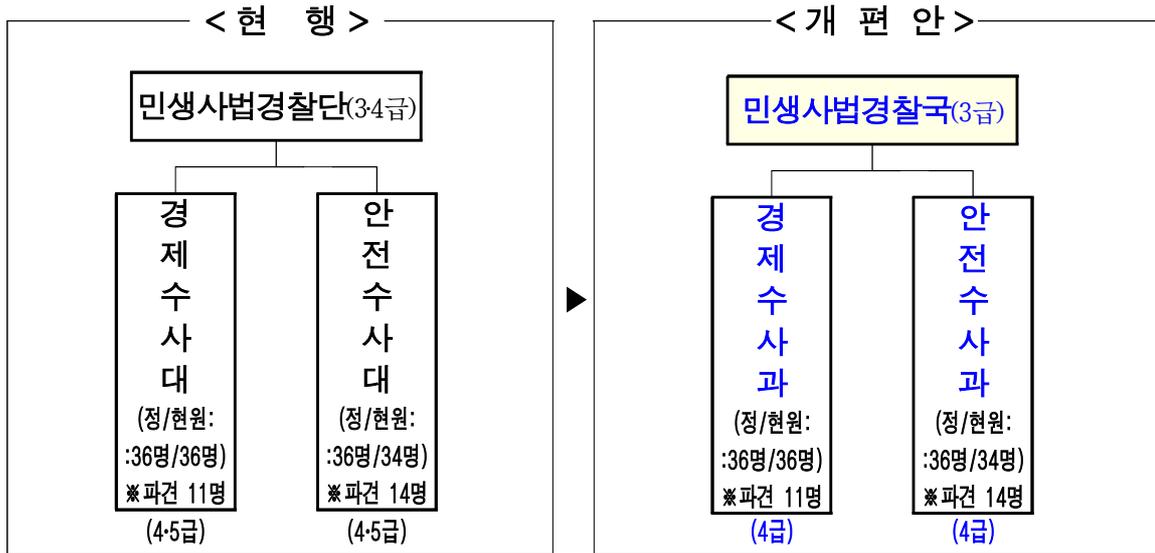
집중하는 ‘정보보안과’와 정보 인프라를 구축·관리하는 ‘정보통신과’로 각각 기능을 이원화함.

- 그리고 정보시스템담당관과 정보공개담당관은 업무관리·문서공개·기록관리 등의 행정시스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정보시스템과’로 통합함.
- 이러한 재편은 데이터기반 정책 수립과 디지털 재난 예방·대응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디지털정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지난 조직개편(2022.7.)에서 행정포털 등 내부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소관인 행정정보 공개·기록물 사무를 당시 신설된 디지털정책관(2·3급)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이관하였으나,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보시스템담당관’과 ‘정보공개담당관’을 폐지·통합함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기록물 사무의 소관부서가 ‘정보시스템과’로 다시 변경되었는바, 빈번한 부서 변경으로 인해 행정정보 공개·기록물 사무가 해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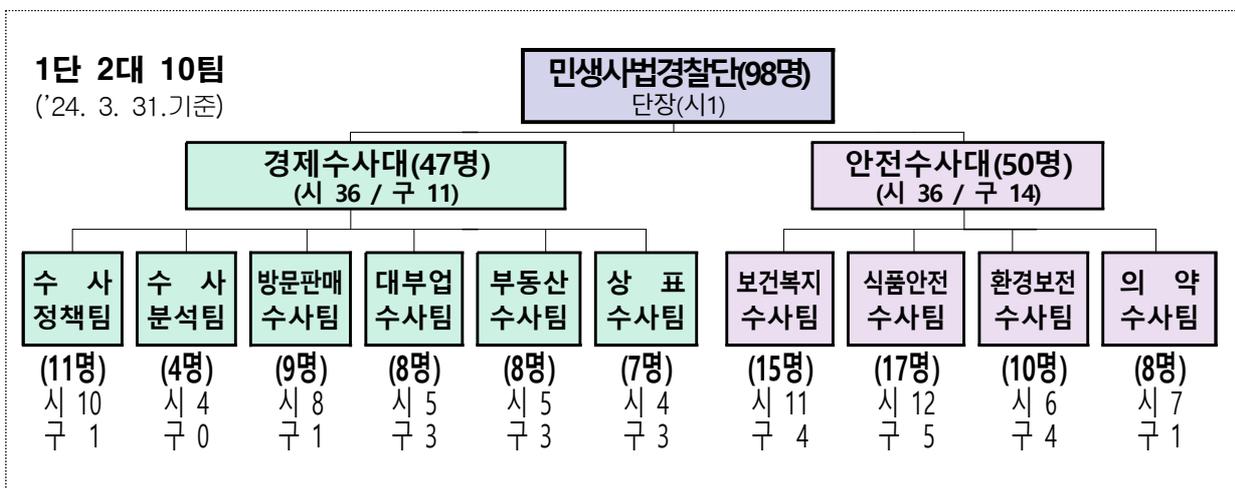
(10) 민생사법경찰단의 개편(안 제14조의2)

- 민생사법경찰단(3·4급)은 민생사법 분야 전담기구로서의 위상과 현 운영인력에 적합한 기구로 격상하기 위해 ‘국’ 단위의 정식 기

구로 개편하여 ‘민생사법경찰국(3급)’ 으로 하고,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경제수사대와 안전수사대(4·5급)는 각각 과 단위의 ‘경제수사과(4급)’ 와 ‘안전수사과(4급)’ 로 개편함.



- 민생사법경찰단은 종전의 행정국 내 민생사법경찰단(3·4급, 1단 2반 8팀 운영)으로 확대·개편된 이후('15. 11. 12.), 조직 위상 및 역량 강화 차원에서 행정1부시장 직속 독립기구로 설치('16. 2. 4.)되었으나 기구정원규정에 따른 기구 수 제한으로 인해 1단 2대 10팀 98명(시 73명, 자치구 25명) 인력의 과 단위 기구 형태로 운영되어 왔음.



- 한편 기구정원규정에 따르면, 국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조제1항), 과의 설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5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제6조제5항)17).
- 따라서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의 운영인력이 자치구 파견인력을 포함하여 98명이라는 점에서, 이는 평생교육국(87명)이나 관광체육국(84명)의 본청 정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업무량의 측면에서는 국의 설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서울시 주요 국별 조직 및 정원 현황 >

(’24. 4월 기준, 단위: 명)

조직 및 정원				과별 평균 인원
행정국	2·3급	350	7과 31팀	50
재무국	2·3급	238	6과 33팀	39.7
평생교육국	2·3급	87	4과 18팀	21.8
관광체육국	2·3급	84	4과 17팀	21
시민건강국	2·3급	193	5과 27팀 1센터(3팀) 1단 1반(4팀)	32.2
푸른도시여가국	2·3급	144	7과 31팀	20.6
물순환안전국	2·3급	121	4과 25팀	30.25
민생사법경찰단	3·4급	73 (파견인력 포함 98)	2과 10팀	36.5 (파견인력 포함 49)

※ 사업소 성격 기구 정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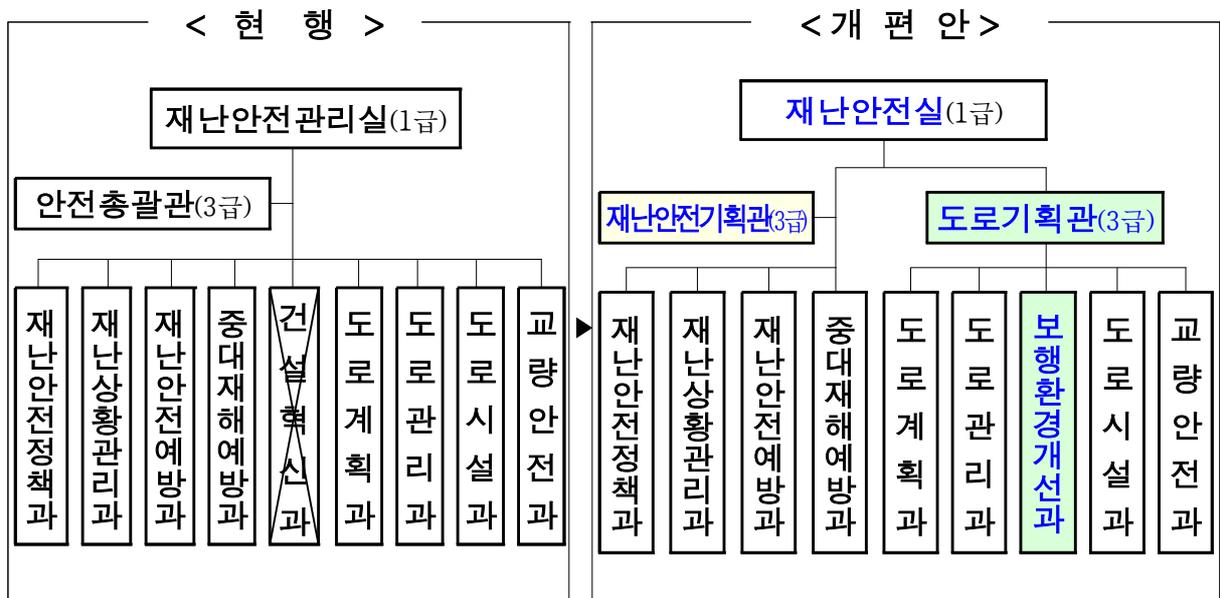
17) 다음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함.

- i) 국의 소관 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 ii)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 그러나 행정기구의 개편은 기구의 능률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통솔 범위를 고려해야 하고(기구정원규정 제5조제1항제5호), 법령에서 국의 설치 기준을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것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민생 사법경찰국을 2과 체제로 운영하는 것은 법령상의 형식 요건에 맞지 않고, 과장의 통솔범위가 다른 국에 비해 비대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민생사법경찰국을 3급 기구로서 2개의 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1) 재난안전관리실의 확대·개편(안 제15조)

- 재난안전관리실은 시민이 알기 쉽도록 ‘재난안전실’로 명칭을 변경 하면서 ‘건설혁신과’를 폐지하며, ‘도로기획관’(3급)과 ‘보행환경개선과’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1실 1관 9과에서 1실 2관 9과로 개편됨.



- 그리고 실장을 보좌하는 ‘안전총괄관’은 ‘재난안전기획관’ (3급)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혁신과’의 폐지와 동시에 그 업무를 신설되는 ‘건설기술정책관’ (3급)으로 이관하여 재난안전에 관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또한 도로분야 전반의 업무를 전담하는 3급 보조기관으로, 실장 밑에 ‘도로기획관’을 신설하고,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추진동력 강화를 위해 ‘보행환경개선과’를 비롯하여 도로·안전·유지관리 등을 담당하는 5개 과를 계선조직으로 배치함.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걷기 편한 서울시 만들기’를 위해 도심지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였으나, 도심지 관리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바뀌면서 시 차원의 개선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자치구에서 노후된 지역에 대한 재정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된 바 있음.
- 이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은 보행환경 개선 기능 강화를 위한 보도·보행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보행 중심의 보도 재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보행 인프라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보행자가 중심이 되는 도로정책의 지속적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하겠음.
- 또한 보행환경 개선으로 관광객 유치에 위한 길거리 재정비 추진과 동시에 대규모 축제 및 행사에 대비해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보행환경개선과’의 부서명칭과 관련하여 현행 도시교통실의 ‘보행자전거과’에서 보행 안전 및 보행 공간 조성 업무 등 보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행환경개선과’의 주요업무가 보도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이라는 점에서 기능상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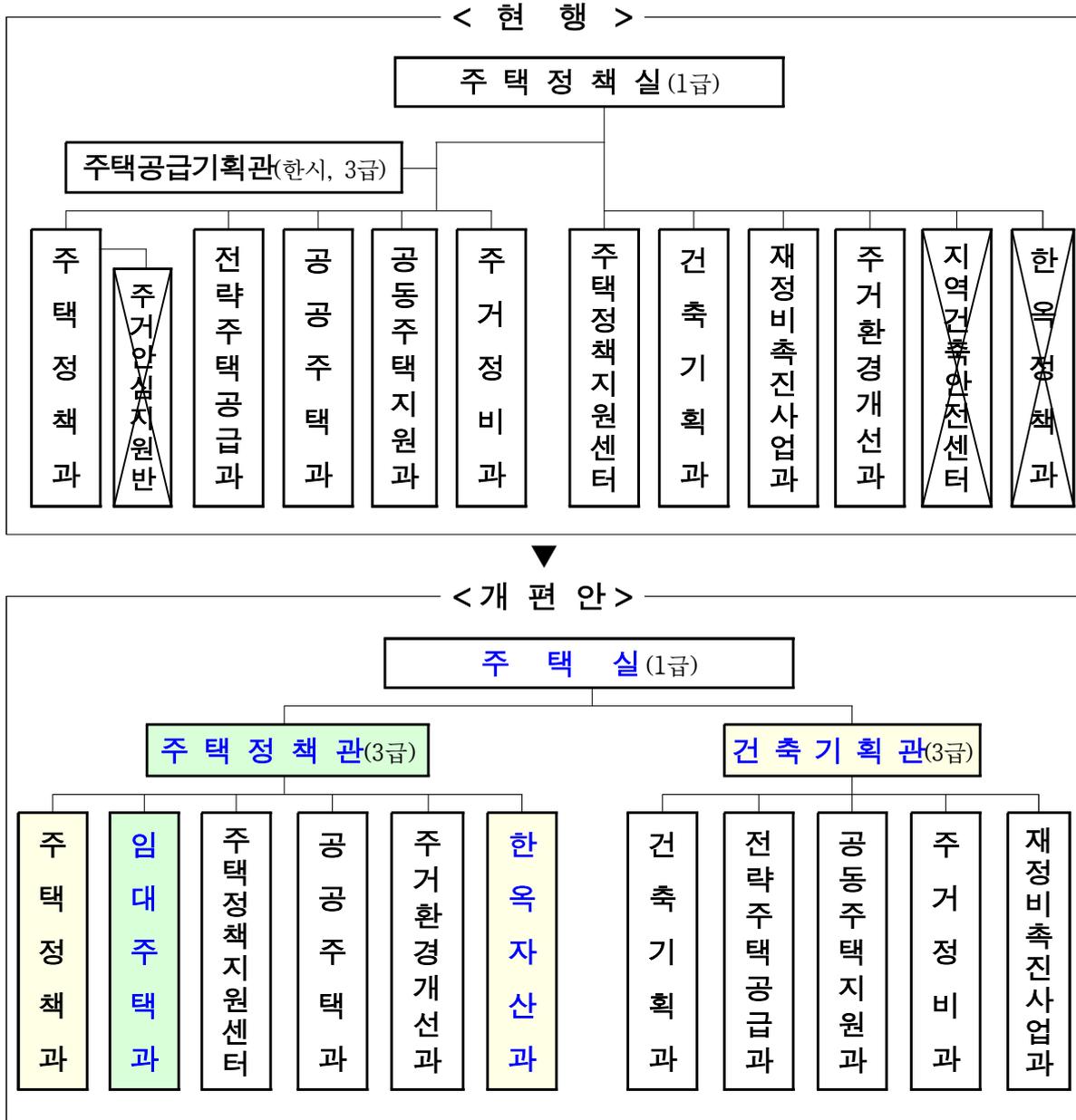
< 보행환경개선과 및 보행자전거과 업무 비교 >

재난안전관리실 (보행환경개선과)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블록 성능개선 및 조레·매뉴얼 개정 - 노후 보도 및 측구 정비 - 보도공사장 현장점검 및 관리 - 보도공사 설계기준 및 매뉴얼 관리 -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 거리가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가게 개선 종합대책 - 거리가게 허가제(특화거리 조성 등)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 도로부속 안전시설 유지·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사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 도로부속물(방호울타리 등) 관리 ○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전거 정책수립 및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공공자전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자전거도로 등 이용시설 확충계획 수립 - 보행문화 확산 및 보행·자전거 안전교육 ○ 보행안전 및 보행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 - 어린이·노인 사고다발지역 사고분석 - 도로공간재편 계획수립·설계·사업관리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관리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대책 및 제도 개선

(12) 주택정책실의 확대·개편(안 제16조)

- 주택정책실은 ‘주택실’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주택정책관’ (3급)과 ‘임대주택과’를 신설하고, ‘주거안심지원반’, ‘지역건축안

전센터’, ‘한옥정책과’를 폐지하여 기존의 1실 1관 11과 1반에서 1실 2관 11과로 재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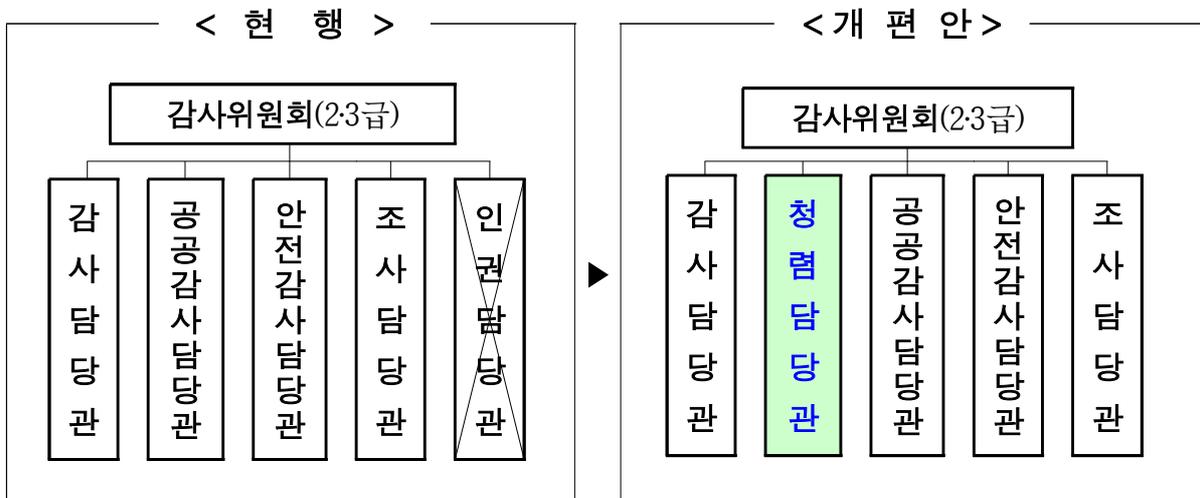
- ‘주택정책관’은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주거복지 추진동력을 강화하고자 신설한 것으로, 이를 위해 안 제16조 주택실 분장 사항에 “임대주택 정책수립 시행, 매입·공급·관리에 관한 사항(제2호)”을 추가함.

- 또한 ‘임대주택과’는 공공임대주택 기능의 일원화를 위해 ‘주택정책과’, ‘공공주택과’, ‘주거안심지원반’ 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신설된 것임.
- 이와 함께 ‘주거안심지원반’은 폐지하면서 기존의 취약계층 주거 안정 기능은 ‘주택정책과’로 이관하여 주택정책 및 주거복지 기능을 통합 추진함.
- 그리고 ‘한옥자산과’는 기존의 한옥 등 건축자산을 담당하던 ‘한옥정책과’에 현재 건축기획과에서 추진 중인 서울비엔날레 운영과 서울도시건축센터 운영 및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재편·신설됨.
- 또한 ‘건축기획관’은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주택공급기획관(3급)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주택정책·기획 및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기구로 전환하고,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5개 과를 계선조직으로 둬.
- 한편 건축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던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설 안전관리 정책 통합 추진을 위해 소관 부서가 변경되면서 신설되는 건설기술정책관(3급)으로 이관됨.
- 이번 조직개편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내실 있는 주택정책과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공급 관련 부서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주택실은 원활한 조직관리를 위해 주택정책·기획,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 등을 소관으로 하는 ‘주택정책관’ 과 주택·건축 공급, 주거정비(재건축, 재개발) 등을 소관 하는 ‘건축기획관’ 을 편제로 하고 있으나, 업무대상과 사업추진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조직개편의 효과성 측면에서 다소 의문이 있다 하겠음.

(13) 감사위원회의 재편(안 제127조)

- 감사위원회는 ‘청렴담당관’ 이 신설되고, ‘인권담당관’ 의 업무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이관됨.



- 청렴담당관은 청렴도 종합대책 수립, 적극행정 지원과 일상감사 및 공직자 재산등록, 퇴직자 취업 심사 업무 등 감사위원회 내 분산되어 있던 청렴 관련 사무를 이관받아 총괄·전담할 예정임.

< 청렴담당관 주요 업무 >

주요업무	이전 부서
청렴도 종합대책 수립·추진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지원	감사담당관 적극행정팀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공공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자 취업 심사	조사담당관 윤리사무팀

- 이는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낮은 평가등급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청렴담당관의 신설을 통해 적극적인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할 필요성은 인정됨.

< 최근 3년간 서울시 청렴도 평가 결과 >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종합청렴도	3등급	3등급	4등급
청렴체감도	4등급	4등급	4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2등급	4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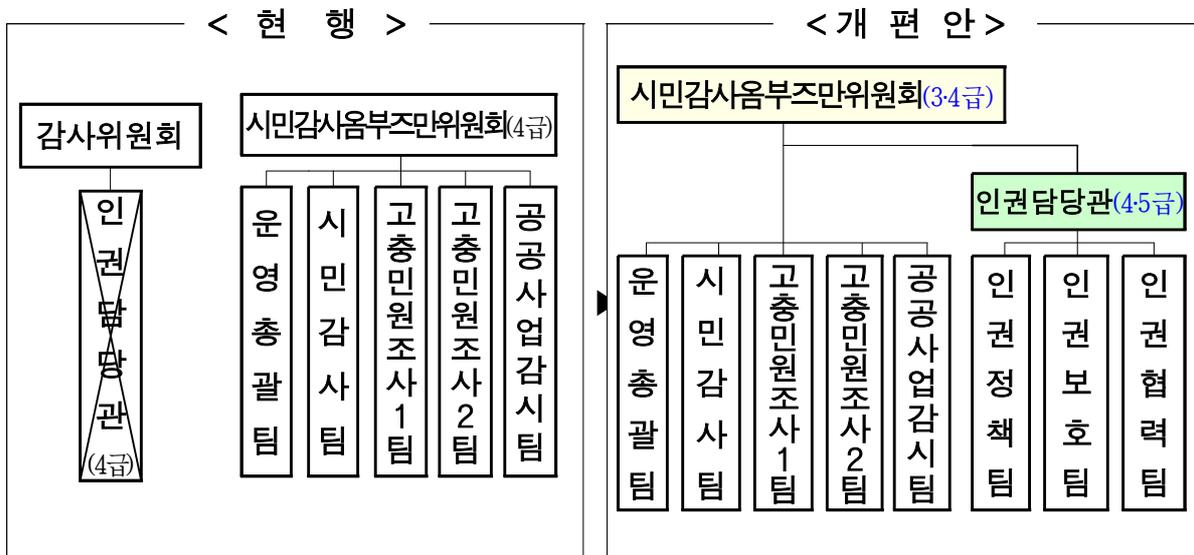
- 다만 과 단위 부서가 신설되는 만큼, 기존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 이외에 신규 사업을 추가 발굴할 필요가 있고 동 조례의 감사위원장의 소관사무로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동 개정조례안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

< 감사위원장 소관사무 >

<p>「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7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정책 및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재심의 및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6.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7.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9. 감사사무의 의뢰에 관한 사항

(1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확대·개편(안 제130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옴부즈만위원회”)는 위원장의 직급이 상향(4급→34급)되고, 인권 정책 추진 부서인 ‘인권담당관(4급→45급)’이 감사위원회에서 이관되어 1위원회 1담당관으로 확대·개편됨.



- 옴부즈만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은 시정감시라는 점에서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시정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옴부즈만위원회와 달리 인권담당관은 내부통제 기관이므로 통제목적과 추진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조직개편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특히 현재 위원장이 개방형 4호(4급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산하에 현재 4급이 부서장인 인권담당관을 4·5급 복수직급 기구로 편제하면서 현 위원장의 임기(2022. 5. 26. ~ 2025. 5. 25.) 만료시까지 통솔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인권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담당관의 직급을 하향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서울시의 인권 정책에 대한 추동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바, 향후 중장기적으로 인권담당관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같이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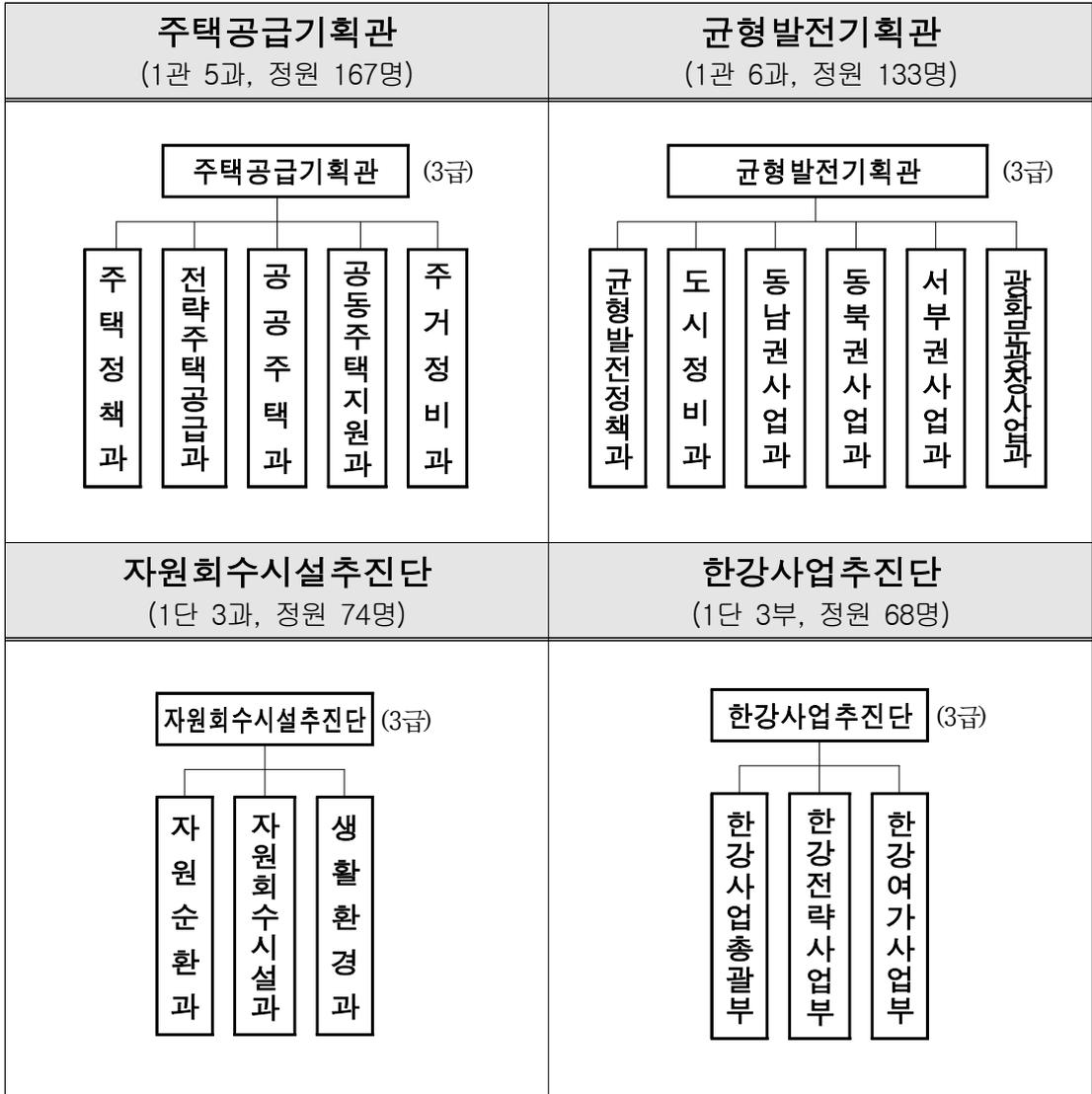
(15) 한시기구의 정비 및 존속기한 연장(안 제21조, 조례 제8448호 부칙 제3조 등)

- 기구정원규정 제8조에 따르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인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 종료되는 사업 수행을 위해 존속기한을 정하여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조에 근거하여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한강사업추진단 등 총 4개의 한시기구를 운영 중이며, 올해 7월과 8월에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음.

< 서울시의 한시기구 현황 >

기구명	존속기한	주요업무	비고
(3급) 주택공급기획관	'23. 8. 19. ~ '24. 8. 18.	- 주택공급정책 총괄 및 조정 -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 확대 - 청년주택, 상생주택, 역세권주택 등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3급) 균형발전기획관	'23. 8. 19. ~ '24. 8. 18.	- 지역별 핵심거점 조성 추진업무 총괄 및 조정 - 국제교류·복합지구 건립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재생과 개발 정비 방식을 융합한 도시공간 혁신 총괄 - 대형 프로젝트 사업별 공정관리, 전문가 및 시민 의견청취, 국가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대내·외 업무협의 및 조정	

(3급) 자원회수시설추진단	'23. 8. 19. ~ '24. 8.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총괄 -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라운영 및 현대화 계획 수립 -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전절차 이행, 주민 설득, 민원 대응 - 매립시설·재활용시설 관리,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 처리 관리 	
(3급) 한강사업추진단	'23. 7. 17. ~ '24. 7.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총괄 및 핵심사업 추진 - 수상교통 활성화 및 수상공간 확충 관련 사업 기획실행 - 수상레포츠 활성화 및 자연친화공간 조성 수립 	본청 외



- 동 개정조례안은 기구정원규정의 개정으로 국장급(3급) 기구 및 한시 기구(3급)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시기구 중 일부를 일반기구화하여, ‘주택공급기획관(3급)’은 폐지 후 ‘건축기획관(3급)’으로 재편하고, ‘균형발전기획관’은 기존 3급에서 3·4급으로 직급을 변경하여 일반기구화함.

주택공급기획관 (3급) 폐지 ⇒ 건축기획관 (3급, 보조)	(소속) 주택실
균형발전기획관 (3급) ⇒ 균형발전기획관 (3·4급, 보좌)	(소속) 균형발전본부

- 한편 ‘자원회수시설추진단’과 미래한강본부 산하의 ‘한강사업추진단’은 종전의 개정조례안의 부칙 개정을 통해 각각 3년씩 존속기한을 연장함(자원회수시설추진단은 '27. 8. 18.까지, 한강사업추진단은 '27. 7. 16.까지로 연장).
- ‘자원회수시설추진단’과 ‘한강사업추진단’은 3급 한시기구로, 종전에는¹⁸⁾ 행정안전부와 미리 설치 협의를 해야 했으나, 이번 기구정원규정의 개정에 따라 협의 대상 직급이 2급으로 상향되면서 동 한시기구의 연장에 관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가 사라지게 됨.
- 한편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은 '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역량 확대 등을 위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폐기물 원천감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고, ‘한

18) [개정 전]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강사업추진단'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총괄 및 핵심사업 추진 기구로서 '23.3월 프로젝트 발표 이후 아직 초기 진행 단계인 점에서, 두 한시기구 모두 연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의 연장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¹⁹⁾.

<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개요 >

- 위치/면적: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6 / 21,000㎡
- 처리대상: 서울 발생 생활폐기물
- 시설용량: 1,000톤/일 (500톤/일×2기)
- 처리방식: 스토커 소각방식
(*스토커 소각로: 연소 장치 위에 폐기물을 투입하는 소각로)
- 규모: 지하5층~지상4층, 굴뚝 지상 200m
- 건축면적(연면적): 8,518.55㎡ (39,331.4㎡)
- 공사기간(입찰방식): 3년 9개월(일괄입찰)
/ 8,458억원 (주민편익시설 포함)



<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이행 현황 >

계	사업 초기				사업 안정화	
	사업준비	계획수립	사전절차	실시설계	진행	완료
50개	10개	5개	9개	6개	12개	8개
	30개				20개	

(16) 그 밖의 사항(부칙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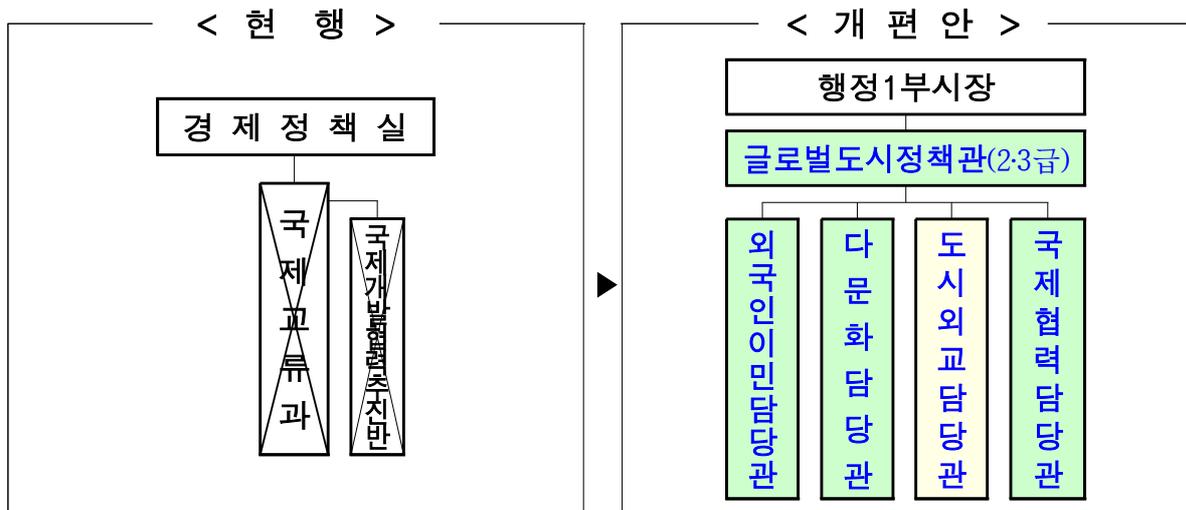
-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 내용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바(부칙 제2조), 이는 다른 조례와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 하겠음.
- 다만 개정 내용이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남아있는 점에서 관련 후속 입법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됨.

19) 기구정원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라. 그 외의 조직개편안(시행규칙 사항)

(1) 글로벌도시정책관의 신설

-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을 신설·배치하고,
 해외도시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서울의 글로벌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경제정책실에서 국제교류과와 국제개발협력추진반을 이관받아 각각 ‘도시외교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개편하여 다문화 관련 사무와 국제협력 사무를 총괄하는 1관 4담당관의 행정1부시장 보좌기구로 신설됨.



- 이 중 ‘외국인이민담당관’은 정부(법무부)의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중앙·지방협력 실무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광역지자체별 이민정책 전담조직 설치’ 권고를 수용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되는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총괄적으로 대응하고자

여성가족정책실(가족다문화담당관)로부터 이민정책, 외국인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이관받고, 경제정책실(금융투자과)로부터 서울 글로벌센터 운영 등의 사무를 이관받아 신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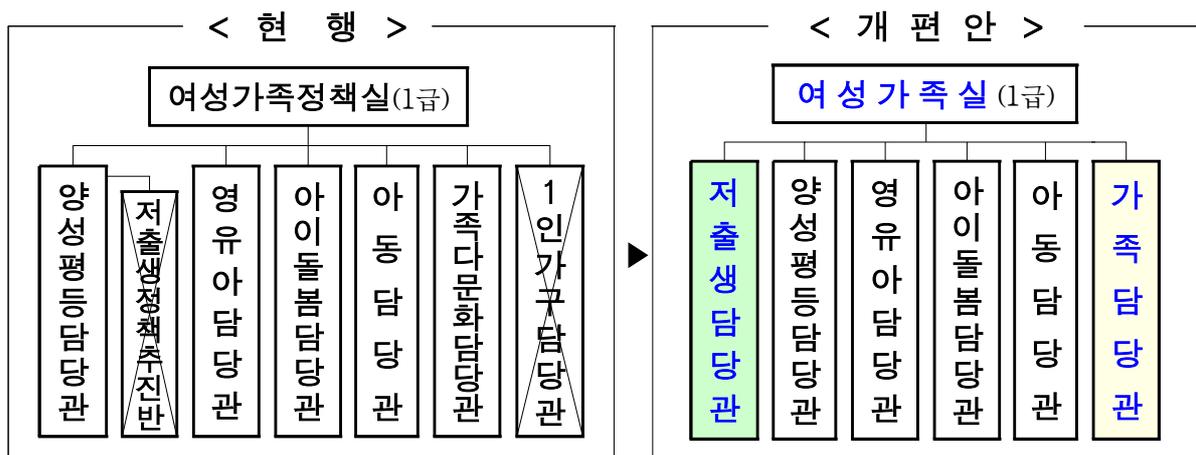
- 그리고 ‘다문화담당관’은 여성가족정책실(가족문화담당관)로부터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및 사업 운영,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사회통합 관련 사무를 이관받고, 경제정책실(금융투자과)로부터 외국인학교 유치·관리 등의 사무를 이관받아 신설됨.
- 또한 ‘도시외교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은 종전에 경제정책실 소속의 국제교류과와 국제개발협력추진반을 이관받으면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며,
‘도시외교담당관’의 지역별 교류 관련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자 인도, 중동 관련 교류사무 등을 4·5급 복수직급 부서인 국제개발협력추진반에 이관하여 4급 부서인 ‘국제협력담당관’으로 격상하였음.
- 이와 같이 인구감소로 인한 산업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이주·이민을 장려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제협력기능과 통합·연계하여 외국인 정책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52.7%²⁰⁾가 한국계 중국인 또는 중국인으

20) 2023년 4/4분기 기준 서울 거주 등록외국인은 252,765명이며 이중 한국계 중국인이 70,051명, 중국인이 63,160명임.(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등록외국인 현황)

로 특정 국적에 집중되어 있는바, 향후 산업별 요구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국가에서 인재를 유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여성가족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노동이주민 관련 정책의 총괄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2) 여성가족정책실의 개편

- 여성가족정책실은 ‘여성가족실’로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종전에 4·5급 복수직급 조직인 저출생정책추진반을 4급 조직인 ‘저출생담당관’으로 격상하고, ‘가족다문화담당관’은 그 소관사무인 다문화 관련 사무를 신설되는 글로벌도시정책관(다문화담당관)으로 이관함에 따라 ‘가족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1인가구담당관을 복지실로 이관하여 1실 6담당관으로 개편함.



- 이 중 ‘저출생담당관’은 인구감소와 저출생이 국가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종전에 저출생정책추진반(4·5급)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함께 일·생활 균형,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의 업무를 양성평등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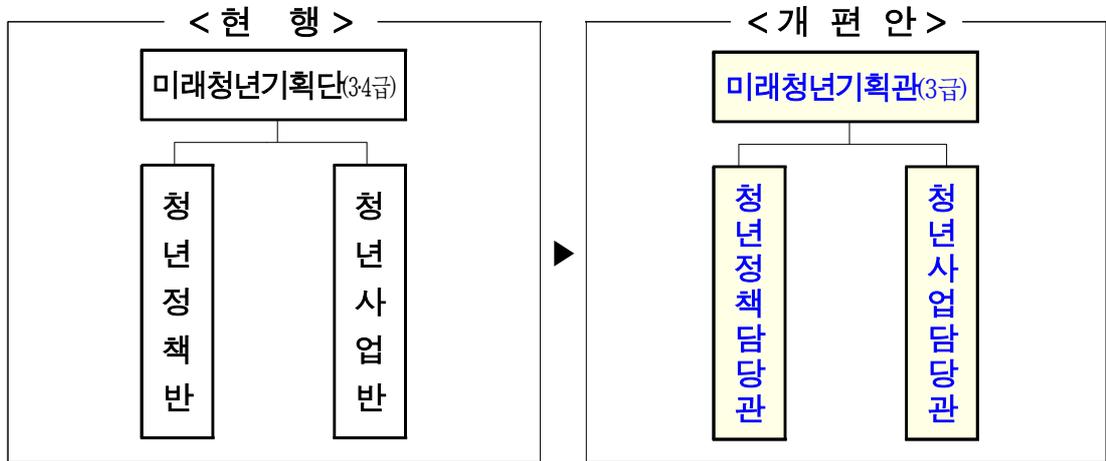
으로부터 이관받아 과(4급) 단위 조직으로 격상하고, 여성가족실의 총괄부서로 승격시킴.

- 그리고 ‘양성평등담당관’은 1인가구담당관이 복지실(돌봄·고독정책관)로 이관되면서 여성가족실에 존치되는 안심마을보안관, 안심물품지원 사업 등의 사무를 이관받음.
- 또한 ‘아이돌봄담당관’은 저출생정책추진반의 소관 사무인 양육친화주택 관련 사무를 이관받음.
- 한편 ‘가족담당관’은 다문화 관련 사무를 신설되는 글로벌도시정책관(다문화담당관)으로 이관하고, 아이돌봄담당관으로부터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등을 이관받음.
- 이와 같이 여성가족실의 조직개편은 글로벌도시정책관 및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신설을 위한 업무 이관과 이에 따른 여성가족실 내의 부서별 업무 조정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다른 실 단위 부서가 최소한 9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나 여성가족실은 6개 과에 불과하고, 반면에 일부 국 단위 부서²¹⁾는 여성가족실 보다 많은 7개 과로 구성되는 등 여성가족실의 통솔범위나 업무량이 다소 과소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 단위 조직으로의 존립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1) 행정국, 시민건강국, 푸른도시여가국

(3) 미래청년기획단의 개편

- 미래청년기획단(3·4급)은 1단 2반 형태의 과 단위(정원 42명)로 운영 중이나 청년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래청년기획관(3급)’으로 격상하고, 기존 4·5급인 ‘청년정책반’ 및 ‘청년사업반’은 각각 4급인 ‘청년정책담당관’ 및 ‘청년사업담당관’으로 직급을 조정하여 1관 2담당관 체제로 개편함.



- 미래청년기획단은 행정1부시장의 직속기구로, 2025년까지 일자리·주거·복지 등 총 57개 과제로 확대되는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이 중 미래청년 일자리사업, 청년층 신용회복 지원사업 등 25개의 과제를 직접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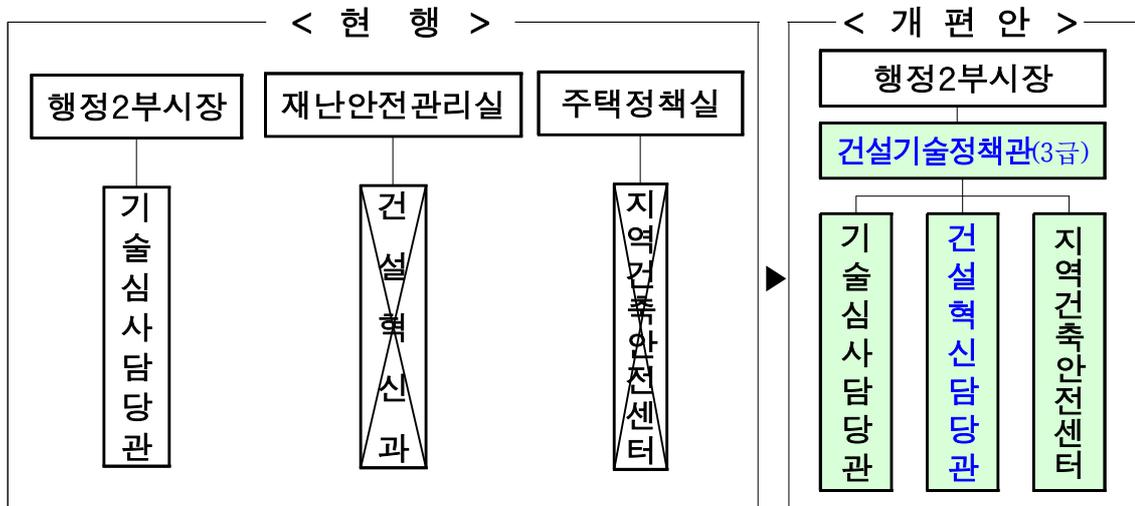
<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분장 >

부서명	주요업무
청년정책반	· 서울시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 서울시 청년거버넌스 운영, 미래청년 일자리 사업, 서울 청년봉사단 운영 등
청년사업반	·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운영,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 서울청년공간 사업계획 수립, 서울 청년 영테크,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 등

-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한 미래청년기획관(3급)과 계선조직의 직급 격상은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확대되는 57개의 청년정책 과제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건설기술정책관의 신설

- ‘건설기술정책관’ (3급)은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자 재난안전관리실의 ‘건설혁신과’와 주택정책실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이관받아 행정2부시장 직속으로 신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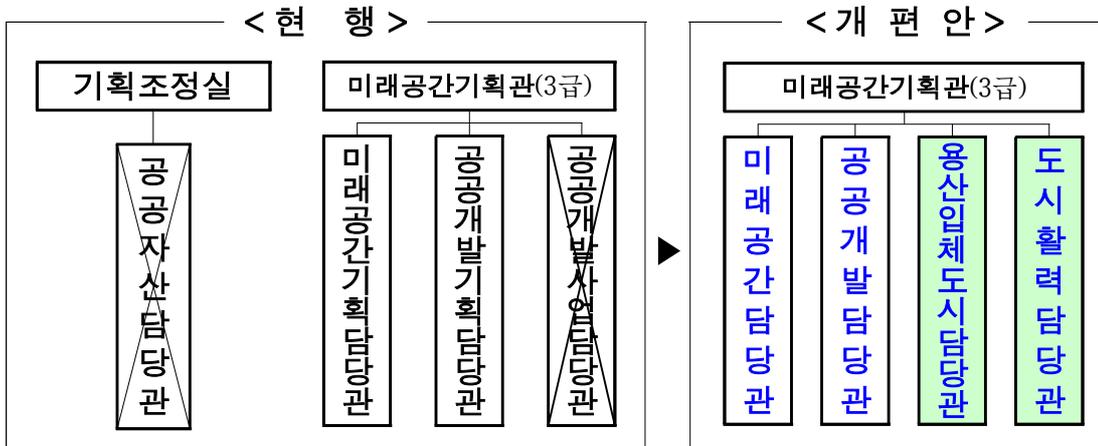


-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공공건설 공사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 건축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원도급사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3개 부문 8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2023.11.7.).

- 핵심과제로는 공공건설 부문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 민간건설 부문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 산업체질 부문 ▶현장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 등이 포함됨.
- 이와 같은 조직개편안은 부실공사 발생 시마다 마련됐던 임기응변식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 건설안전 확립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재난안전관리실, 주택정책실 등 서로 다른 편제에 있던 업무와 조직을 단편적으로 통·폐합함으로써 부서 간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5) 미래공간기획관의 확대·개편

- 미래공간기획관(3급)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도시 활성화 관련 종합 정책기획을 위해 ‘공공개발사업담당관’을 폐지하고, ‘용산입체도시담당관(4급)’ 및 ‘도시활력담당관(4급, 개방형)’을 신설하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및 도시 활성화 업무 중심으로 확대·개편함.



* (명칭 변경) 미래공간기획담당관 → **미래공간담당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 **공공개발담당관**

- 현재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비온드 조닝(융복합도시), 공원녹지 확대(녹지생태도심), 보행일상권 등 서울공간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음.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개요 >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대
- 면 적 : 약 495천㎡
- 사업방식 : 도시개발사업 (수용·사용)
- 용도지역 : 3종일반주거→준주거, 일반·중심상업
- 시 행 자 : 코레일, SH공사(지분율 7:3)
 - 토지소유 : 코레일 72%, 국토부 23%, 한전 등 5%
- 사 업 비 : 14.3조원 (보상비 8.9조원 공사바금융비 등 5.4조원)
- 개발방식 : 공공 기반시설 先투자 → 민간 개별필지 개발 (서부이촌동 제외)
- 향후계획
 - '24. 6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서울시)
 - '25. 6월 실시계획인가(지구단위계획 확정, 서울시)
 - '25. 10월 기반시설 공사 착공, 토지 분양
 - '28. 기반시설 준공 / '29. ~ 건축인허가 및 입주

- 또한 서울시는 서울시의 활력을 제고하는 ‘편 시티 서울’ 조성을 위해 공간구조 재편과 함께 대관람차, 수변공원, 문화시설 등 랜드마크 조성 및 관련 엔터테인먼트 시설·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편 시티 서울 조성 추진 개요 >

□ 추진방향

- ‘편 시티 서울’ 조성을 위한 공간구조 재편 및 종합기획 추진
- 서울시 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시설 간 연계 방안 마련

□ 추진내용

- 1단계: 상암 일대 활성화 사업 추진
 - 상암 일대 활성화 종합계획 및 세부 전략 수립·추진
 - 공간구조 재편 및 실행전략 마련, 민자사업 발굴 등 추진
 - 상암 일대 추진 중인 개별사업 방향성 정립 및 통합구상
 - 마포문화비축기지 재조성, 대관람차, 자원회수시설 상부 랜드마크, 월드컵 공원 명소화 등
 - 탄소제로·생태·미디어 연계 운영 콘텐츠 개발 통한 세계적 명소 조성
 - DMC 및 한강, 상암일대 주요 거점 연계 통합 콘텐츠 기획 등
- 2단계: 서울 전역 편시티 조성 추진
 - ‘편 시티 서울’ 조성 위한 신규사업 대상지 발굴 및 핵심 콘텐츠 개발
 - 도로·철도 지하화 상부 구간 등 신규 대상지 발굴 및 종합 발전계획 수립, 지역별 특성 고려한 문화체험 콘텐츠 개발
 - 체험형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위한 신규 민자사업 발굴 및 추진
 - 민·관협력 통한 창의·혁신적 민자사업 발굴, 한강·남산 등 서울시 문화 관광자원 활용, 민간 아이디어 공모 및 사업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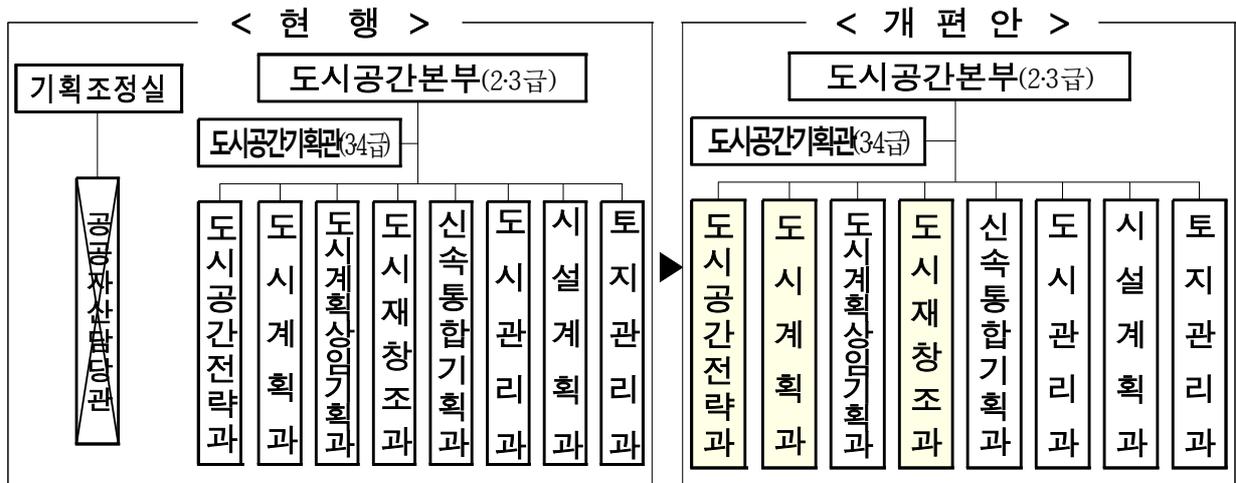
- 이와 같이 ‘매력특별시 서울’의 시정가치를 반영한 정책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함으로써 종전의 업무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유기적인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보다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기획조정실의 공공자산담당관의 폐지에 따라 공공부지 활용구상 기능²²⁾이 공공개발담당관의 대규모 부지 개발기획 기능과 통합되면서 공공부지 활용구상 및 개발사업 기획 업무의 추진 주체가 일원화되는바, 이에 따라 밀도 있는 공간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됨.

22) 공공유희부지 및 공공토지자원 활용성 검토(← 기획조정실 공공자산담당관 공공자산정책팀 및 공공용지활용팀)

공공부지 활용 구상 기능	⇒ 이관 ⇒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대규모 부지 개발기획기능과 통합
공공자산담당관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	기부채납 관련 계획 및 제도 개선 기능과 통합
기부채납시설·기금 관리기능			

(6) 도시공간본부의 개편

- 도시공간본부는 작년 제321회 정례회시 기존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공간본부로 확대·개편된 바 있으며, 이번 조직개편안은 지상철도 지하화와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팀을 신설하여 조직을 보강함(1관 8과 동일).



- 먼저 도시공간전략과에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25년 1월 31일)으로 서울시 차원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제안, 노선별 공간계획 마련,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 업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구상 추진을 위한 ‘철도지하화팀’이 신설됨.

< 철도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사업 개요 >

- 추진대상 : 일반철도·고속철도 및 철도 주변지역 개발사업
 - 국철 71.6km(경부 19.5, 경인 5.8, 경의 10.3, 경원 26.1, 경춘 3.1, 중앙 6.8) 지상구간 추진
 - ※ 도시철도 지상구간(29.6km)은 도로 및 하천 상부를 통과하는 등 사업성 낮아 제외
- 사업체계 : 철도지하화사업 + 철도부지개발사업 ⇒ 철도지하화통합개발
- 추진절차 : 종합계획(국토부) → 노선별 기본계획(지자체) → 사업 시행
- 재원조달 : 국유재산(철도부지) 사업시행자에 출자 → 채권발행 가능
- 비용부담 : 개발사업 수익 활용 원칙, 지자체 보조 가능
- 지원규정 : 복합개발을 위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 규제 완화

- 그리고 도시재창조과에는 2024년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 이후 하반기 구역별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세운활성화계획팀(현 세운지구활성화팀) 외에 도심공원 조성을 위한 ‘세운활성화사업팀’ 이 신설되어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임.

<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 개요 >

- 위 치 : 종묘~퇴계로 일대
 - (종로구) 종로3가동, (중구) 산림동·입정동 일대
- 면 적 : 439,359.4㎡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세운재정비촉진지구
- 사업기간 : '21.12.~'35.12.
- 사업내용 : 녹지공간 확보 중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 재정비촉진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추진방향) 종묘~퇴계로 일대 낙후도심에 풍부한 녹지공간 창출 및 고밀·복합개발 통해 일·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중심지로 조성
 - (주요내용)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구역별 정비사업 추진
- 도심공원 조성(도시계획시설사업)
 - (추진방향) 남북녹지축 완성 및 을지로 일대 비즈니스축 확장에 따른 필수 기반시설 적기공급 위해 시설사업으로 도심공원 조성
 - (주요내용) 삼풍상가 및 PJ호텔 구간 공원화 추진



- 아울러 기획조정실의 공공자산담당관 폐지에 따른 ‘기부채납시설 및 기금 관리 기능’ 이 도시공간본부의 ‘기부채납 관련 계획 및 제도개선 기능’ 과 통합·운영함으로써 그간 분산되어 운영되어 온 기부채납 관련 기능을 일원화함.
- 이와 같이 도시공간본부의 개편사항은 조직보강 및 기능 재정비를 통해 서울시의 공간 대개조의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도시공간본부가 올해 확대·개편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측면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마. 기타 의견

- 동 개정조례안 및 이와 관련한 조직 개편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 의견조회를 실시²³⁾한 결과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정원도시국’ 의 명칭을 현행 ‘푸른도시여가국’ 으로 유지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함.

< 제출의견의 주요 내용²⁴⁾ >

□ ‘정원도시국’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 동 명칭은 알기 쉽고, 간결한 의미가 아니며, 현재 푸른도시여가국의 업무 중 일부만을 의미하거나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업무 범위 개념이 축소될 우려가 있어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용어임.

- ※ 산사태 안전·동물보호·생태계·생물다양성 등 배제, ‘정원’은 조경·녹지와 관계된 부차적 개념 등
- 입법예고 기간이 짧아 전문가 등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생략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패러다임을 고려하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언론 동향 존재

□ 시민이 쉽게 인지가능한 포괄적 용어 사용 필요 - **현행 유지 (푸른도시여가국)**

바. 종합 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 삶의 질 제고 및 사회문제 해결 등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적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반한 시정 추진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3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한 기구정원규정의 개정사항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자치조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번 조직개편은 기구 설치 자율화에 따른 승진 기회 확대, 업무 추진 동기 부여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의사결정의 계층 수 증가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저해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²⁵⁾에 따르면 총 정원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원할 계획이므로 향후 중간 직급의 비율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2024. 3. 29. ~ 2024. 4. 2. 실시) 중 입법예고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바, 행정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시민의 관점에서 재고가 필요함.

24) 환경수자원전문위원실-868 (2024. 4. 26.)

25) 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4~2028). 동 계획에 따르면, '25년(19,170명), '26년(19,166명), '27년(19,165명), '28년(19,164명)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98
----------	------

제출년월일 : 2024년 4월 5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후반기 시정 추진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이관·확대 등
기능 조정

- 기획조정실로 ‘약자와의 동행’에 관한 사무 이관(←약자와의동행추진단)
 - ▶ 공공자산에 관한 사무는 기획조정실→도시공간본부 및 미래공간기획관
(규칙기구)으로 이관
- 경제정책실 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능강화
 - ▶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는 경제정책실→글로벌도시정책관(규칙기구)으로 이관
- 복지정책실 내 ‘돌봄복지 및 사회적 고립 해소’ 사무 신설 및 ‘1인가구(←
여성가족정책실)’ 관련 사무 이관
- 도시교통실 내 ‘교통단속 업무’를 ‘주차계획’ 업무와 통합 추진
- 문화본부 내 ‘국가유산 유지보수·전수·계승’ 업무와 ‘국가유산 복원·
가치 제고’ 업무 역할 재정립 및 조문정비
- 시민건강국 내 산재되어 있는 난임, 어르신 건강관리, 중독예방, 대사증

후군 등 '건강관리' 기능 강화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재편하여 소상공인 지원, 노동정책,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소비자 보호, 농산물 유통 업무 추진
-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하여 디지털행정, 데이터기반 행정, 정보시스템 및 정보공개, 정보보안, 정보 인프라 구축, 공간정보 업무 추진
-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재편하여 경제분야 및 안전분야 등 지명직무 단속 추진
- 재난안전관리실 내 '보행환경개선' 관련 기능 강화
 - ▶ 건설혁신 관련 사무는 재난안전관리실→건설기술정책관(규칙기구)으로 이관
- 주택정책실 내 분산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관련 기능 강화
 - ▶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련 사무는 주택정책실→건설기술정책관(규칙기구)으로 이관
- 감사위원회 내 '청렴 역량 증대 및 반부패 기능' 강화
 - ▶ 인권 관련 사무는 감사위원회→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이관

나. 주요 실국(1급 기구)의 핵심사업 추진력 강화를 위한 통솔범위 조정 및 기존 기구 명시화

- 도시교통실, 복지정책실, 주택정책실, 재난안전관리실에 각각 '교통운영관(3급)', '돌봄·고독정책관(3급)', '주택정책관(3급)', '도로기획관(3급)' 신설
- 경제정책실의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 도시교통실의 '교통기획관', 주택정책실의 '건축기획관(←주택공급기획관)' 기구 조례 명시화

다. 자율신설기구 일반기구화

- 자율신설기구 관련 조항인 기구정원규정 제9조의2(기구설치특례)가 폐지됨에 따라 '복지기획관', '디자인정책관', '경제일자리기획관' 정비
- ※ 기구규칙 사항 : 디자인정책관

라. 한시기구 정비 및 존속기한 연장

- '주택공급기획관(3급)'을 폐지하고, 건축기획관(3급)으로 재편
- '균형발전기획관(3급)'을 일반기구화하고, (3.4급)으로 직급 변경
- '자원회수시설추진단(~'24.8.18.)'과 '한강사업추진단(~'24.7.16.)'의 존속기한을 각각 3년 연장('24.8.19.~'27.8.18. / '24.7.17.~'27.7.16.)

마. 시민이 알기 쉽고, 간결한 명칭으로 기구 명칭 변경

- 경제정책실 (→ 경제실), 복지정책실 (→ 복지실), 도시교통실 (→ 교통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민생노동국), 재난안전관리실 (→ 재난안전실), 주택정책실 (→ 주택실), 푸른도시여가국 (→ 정원도시국)
- ※ 기구 규칙 사항 : 여성가족정책실 (→ 여성가족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30조(정원의 규정), 별표2(시·도에 두는 보조·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4. 3. 29. ~ 4. 2.) 결과: 의견제출 있음
 - (의견제출 1건) 입법예고 20일 준수 요청 및 세부 사업 관련 조직 신설 자제, 저출생·고령화·외국인 정책 관련 통합 조직 및 기후 정책 관련 조직 필요 의견(미반영)

※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심연수(☎ 2133-6729)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조의2”를 “제9조”로 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을 “경제실, 복지실, 교통실”로, “시민건강국”을 “시민건강국, 민생노동국, 디지털도시국”으로, “재난안전관리실, 주택정책실”을 “민생사법경찰국, 재난안전실, 주택실”로,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제실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을, 복지실 밑에 복지기획관, 돌봄·고독정책관을, 교통실 밑에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관을, 재난안전실 밑에 도로기획관을 두고, 주택실 밑에 주택정책관, 건축기획관을 둔다.

제5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9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경제정책실)”을 “(경제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9호, 제5호 및 제8호로 한다.

4. 대학 활성화 정책 및 캠퍼스타운 구성에 관한 사항

제7조의 제목“(복지정책실)”을“(복지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제6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중전의 제3호) 중 “복지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지역사회”를 “지역사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장애인복지정책 수립,”을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장애인 거주시설·활동지원·인권·권익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고독·고립 문제 대응,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9. 1인가구 문제 대책 수립 및 1인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도시교통실)”을“(교통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운영·관리”를 “운영·관리, 주정차위반 등 교통단속업무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호 중 “문화재 보존정책”을 “국가유산 보존정책”으로, “문화재 활용”을 “국가유산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 복원 및 관리”를 “국가유산 활용 및 복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관리”를 “관리, 공중위생의 관리”로 한다.

2. 서울형 헬스케어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민생노동국) 민생노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동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보호·물가안정·사회적경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산물 유통 및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4(디지털도시국) 디지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계획 수립, 디지털 행정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통계의 수집·분석·활용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정책 및 통신인프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의 제목 “(디자인정책관)”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정책관”을 “민생사법경찰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디자인진흥정책 수립·시행”을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 단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유관기관 협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의 제목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로(차도) 관리, 도로 등 설해 대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 도로 부속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의 제목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제6호로 하고,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임대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2. 임대주택 정책수립 시행, 매입·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의 제목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정원도시국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27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30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조례 제8448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를 삭제하고, 부칙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중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자원회수시설추진단”으로 하고, “2024년 8월 18일”을 “2027년 8월 18일”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876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중 “제21조제4항”을 “제21조”로 하고, “2024년 7월 16일”을 “2027년 7월 16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민생사법경찰단”을 “민생사법경찰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나목 중 “경제정책실”을 “경제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다목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나목 중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가목 중 “복지정책실”을 “복지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7호가목 중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가목 중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다목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0호가목 중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및 복지정책실장”을 “재난안전실장 및 복지실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택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을 “주택실장, 복지실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정책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복지실장, 민생노동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나목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정책실장”을 “경제실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장”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장”으로 한다.

⑯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장”으로 한다.

⑰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장”으로 한다.

⑱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⑲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⑳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디지털정책관”을 각각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 ㉑ 서울특별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장”으로 한다.

- ㉒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한다.

- ㉓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3항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한다.

- ㉔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주택정책실장”을 “주택실장”으로 한다.

- ㉕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관리실장, 도시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재난안전실장, 교통실장, 기후환경본부장과 정원도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정원도시국장”으로 한다.

별표 1의 관리자란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하고,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하며, 같은 별표의 비고 나목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②6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푸른도시여가국장”을 “정원도시국장”으로 한다.

②7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한다.

②8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한다.

②9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③0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 ⑳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 ㉑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8호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 ㉒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 ㉓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관리청란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

- ㉔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

- ㉕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중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한다.

③7 서울특별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한다.

③8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

③9 서울특별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중 “도로교통사업소장”을 각각 “도로사업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도로 관리사업소장”을 “도로사업소장”으로 한다.

④0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경제정책실”을 “경제실”로 하고, “복지정책실”을 “복지실”로 하며, “도시교통실”을 “교통실”로 하고,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을 “민생노동국”으로 하며, “재난안전관리실”을 “재난안전실”로 하고, “주택정책실”을 “주택실”로 하며, “푸른도시여가국”을 “정원도시국”으로 한다.

④1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7조까지 및 제129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부터 <u>제9조의2</u>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제3조의2(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u>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실·본부·국(이하 “자율신설기구”라 한다)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이 조에서는 “성과평가”라 한다)는 성과지표 달성도, 행정수요 지속성, 기능수행 효율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실시한다.</p> <p>③ 성과평가를 위해 각 자율신설기구는 평가 관련 자료를 조직담</p>	<p>제1조(목적) ----- ----- ----- ----- <u>제9조</u>----- ----- ----- ----- ----- ----- -----.</p> <p><u><삭 제></u></p>

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삭제 또는 자율신설기구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성과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행정국, 재무국, 재난안전관리실, 주택정책실, 도시공간본부,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을 둔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경제정책실장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을, 복지정책실장 밑에 복지기획관을, 디자인정책관을 둔다.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경제실, 복지실, 교통실-----

-- 시민건강국, 민생노동국, 디지털도시국-----
민생사법경찰국, 재난안전실, 주택실----- 정원도시국-----.

③ 경제실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 창조산업기획관을, 복지실 밑에 복지기획관, 돌봄·고독정책관을, 교통실 밑에 교통기획관, 교통운영관을, 재난안전실 밑에 도로기획관을 두고, 주택실 밑에 주택정책관, 건축기획관을 둔다.

제5조(기획조정실) -----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신설>

3. ~ 7. (생략)

8. 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

9. (생략)

10. (생략)

제6조(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5. (생략)

6. 국제교류·협력, 국제기구·회의에 관한 사항

7. 캠퍼스타운 조성·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생략)

9. (생략)

10. (생략)

제7조(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신설>

-----.

1.·2. (현행과 같음)

3. 약자와의 동행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4. ~ 8.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삭제>

10. (현행 제9호와 같음)

9.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6조(경제실) 경제실장은-----

-----.

1. ~ 3. (현행과 같음)

4. 대학 활성화 정책 및 캠퍼스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7. (현행 제4호와 같음)

6. (현행 제5호와 같음)

<삭제>

<삭제>

9. (현행 제8호와 같음)

5. (현행 제9호와 같음)

8.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7조(복지실) 복지실장은-----

-----.

1.·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장애인

3. 복지취약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에 관한 사항

4. (생략)

<신설>

5.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재활시설·편의시설 및 장애인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6. (생략)

<신설>

제8조(도시교통실) 도시교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주차계획의 수립·조정,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7. ~ 9. (생략)

10. 주정차위반 등 교통단속업무 총괄

제10조(문화본부) 문화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거주시설·활동지원·인권·권익에 관한 사항

8. 지역사회 -----

-

6. (현행 제4호와 같음)

7. 사회적 고독·고립 문제 대응,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

5. (현행 제6호와 같음)

9. 1인가구 문제 대책 수립 및 1인가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제8조(교통실) 교통실장은 -----

-----.

1. ~ 5. (현행과 같음)

6. -----
----- 운영·관리, 주정차위반 등 교통단속업무 총괄-----

7. ~ 9. (현행과 같음)

<삭제>

제10조(문화본부) -----

-----.

1.·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 보존정책 수립 및 문화재 활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6. (생략)

제12조의2(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신설>

2.·3. (생략)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생략)

6. 공중위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생략)

<신설>

3. 국가유산 보존정책 --- 국가유산 관리-----

4. 국가유산 활용 및 복원-----

5.·6.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시민건강국) -----
-----.

1. (현행과 같음)

2. 서울형 헬스케어에 관한 사항

3.·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5. ----- 관리, 공중위생의 관리-----

6. (현행 제5호와 같음)

<삭제>

7.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민생노동국) 민생노동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상공인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동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4. 소비자보호·물가안정·사회적경제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

<신 설>

제14조의2(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진흥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

제15조(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

항

5. 농산물 유통 및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의4(디지털도시국) 디지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계획 수립, 디지털 행정에 관한 사항
2. 빅데이터·통계의 수집·분석·활용 등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 공개제도에 관한 사항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정책 및 통신인프라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정책 및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민생사법경찰국) 민생사법경찰국장-----.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 단속-----
2.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유관기관 협력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5조(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

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4. (생략)
- 5. 건설업 관리 및 하도급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 6. (생략)
- 7. 도로 및 부속시설물 관리, 도로 등 설해 대책, 지하안전관리,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8.·9. (생략)

제16조(주택정책실) 주택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생략)

<신설>

- 2. (생략)
- 3. (생략)
- 4. (생략)
- 5. 공공택지개발, 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
- 6. ~ 8. (생략)
- 9. (생략)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 6. 도로(차도) 관리, 도로 등 설해 대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 (현행 제6호와 같음)

- 7.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 도로 부속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 8.·9. (현행과 같음)

제16조(주택실) 주택실장-----
-----.

- 1. (현행과 같음)

- 2. 임대주택 정책수립 시행, 매입·공급·관리에 관한 사항

- 3. (현행 제2호와 같음)

- 8. (현행 제3호와 같음)

- 7. (현행 제4호와 같음)

- 4. ----- 공공주택 -----

- 9. ~ 11.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 5. (현행 제9호와 같음)

10. 소규모 건축물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생략)

제19조(푸른도시여가국)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제21조(한시기구) ① 주택공급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실에 한시적으로 주택공급기획관을 두며, 주택공급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2. 민간 정비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 도시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균형발전본부에 한시적으로 균형발전기획관을 두며, 균형발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균형발전 계획 및 도시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시개발 및 시장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6. (현행 제11호와 같음)

제19조(정원도시국) 정원도시국장-----.

1. ~ 9. (현행과 같음)

제21조(한시기구) <삭 제>

<삭 제>

3. 동남권, 동북권, 서부권 등 권역별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③·④ (생략)

제127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9. (생략)

10.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제130조(소관사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 8. (생략)

<신설>

부칙 <제8448호, 2022.8.8.>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제3항의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디자인정책관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8448호, 2022.8.8.>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

조의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①·②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27조(소관사무) -----
-----.

1. ~ 9. (현행과 같음)

<삭제>

제130조(소관사무) -----

-.

1. ~ 8. (현행과 같음)

9.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부칙 <제8448호, 2022.8.8.>

<삭제>

부칙 <제8448호, 2022.8.8.>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

----- 자원회수시설추진단-----
----- 2027년 8월 18일-----
-----.

<p>부 칙 <제8766호, 2023.7.17.>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 <u>조제4항의</u> 한강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u>2024년 7월 16일</u>까 지로 한다.</p>	<p>부 칙 <제8766호, 2023.7.17.>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 <u>조의</u> ----- ----- <u>2027년 7월 16일</u> -----.</p>
---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소관 사무 조정 및 명칭 변경 사항으로 별도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본 기구 조정으로 인한 정원 변동 관련 비용 추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심연수(☎ 2133-6729)